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2001. 12.

연구자 : 박 명 수(파견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변천	11
1. 의 의	11
2. 연 혁	12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16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9
1. 수급권자	19
2. 소득 및 재산기준	22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33
제 3 장 생산적 복지	39
제 1 절 생산적 복지의 개념	39
제 2 절 생산적 복지의 역사적 유래	41
제 3 절 생산적 복지와 근로의 연계	43
1.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에 대한 논의의 대두	43
2.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개념	44
3.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의 한계와 함축적 의미	44
제 4 장 국민복지 기본선	47
제 1 절 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47

제 2 절 소득보장	49
1. 우리나라 소득보장 체계의 특징	50
2. 소득보장체계상 과제	51
3. 최저소득보장 수준의 설정	51
4. 적정소득보장 수준의 설정	52
제 5 장 주요국가의 생활보장제도	53
제 1 절 개 관	53
제 2 절 스웨덴	53
제 3 절 미 국	59
제 4 절 영 국	63
제 5 절 일 본	66
제 6 장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개선과제	71
제 1 절 법·제도상 개선과제	71
1. 최저생계비	71
2. 수급자 선정기준	75
3. 소득공제제도의 유보	76
4. 주민등록 무적자	78
제 2 절 예산·행정상 개선과제	79
1. 정부 재정상 문제	79
2.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80
3. 생활보호기금 운용	82

제 3 절 기타 개선과제	84
1. 차상위 계층	84
2. 생계비 강제환수	85
3. 수급기간의 무제한	87
제 7 장 결 론	89
부 록	91
참고문헌	121

제1장 서론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보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겨우 외형적인 틀을 갖추어 놓는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까지는 사실상 사회복지 정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있긴 있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해방 후 남북분단과 정치적인 환란, 전쟁, 가난 등 이런 정치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거의 발달되지 못했다.

가난속에서 병에 걸려도 약한 번 못 쓰고 죽어간 빈곤과 질곡의 현실이 20세기 후반 25년의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모습이였다. 1950년대 우리의 사회복지 정책은 미국에서 원조한 밀가루를 한 가정당 한 홉씩 주는 것이 전부였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결국 1970년대까지는 사회복지 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면서 1970년대부터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서서히 사회복지 분야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생활보호 대상자, 국민영세자에게 쌀과 보리를 조금씩 주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말이었다. 그리고 그 극빈층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1979년이다.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제대로 하겠다고 법을 만든 것이 1981년이다. 의료보험은 1977년,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했다. 이렇듯 선진국이 20세기 초반에 만들어 놓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우리는 겨우 20년 동안 만들어 가고 있다. 빨라도 50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이 뒤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늦게 출발했다. 이는 국가 발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일제 36년의 통치를 받았고 남북이 분단되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형성 그 자체도 늦게 되었다. 50~6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의 유지에 급급해 했다.

그 다음에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산업화정책을 펴야 했다. 그 이후에 복지를 해야 하니까 사회복지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인데 이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나누는 것은 평등이고 이는 빨갱이 사상이라는 인식이었다. 이는 남북분단 상황의 비극인데, 사회복지정책을 펴 나가는데 이념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사회복지는 결코 공산주의가 아니며, 평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유와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적 목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복지를 많은 분들이 선별적 시혜로 잘못 알고 있다. 불쌍한 사람이니까 주고, 받는 사람은 늘 의존적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복지를 시혜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는 항상 정책상 부차적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즉, 사회복지의 대상은 불쌍하고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을 인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못했던 문제는 경제발전과도 연관이 있다. 과거 50년 동안 지배적인 사상의 하나가 선성장 후분배였다.

선후관계에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나치게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문제가 되었다. 경제성장 후에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관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 파이라는 것은 항상 모자라는 것이고 이 때문에 복지정책은 항상 뒤떨어져 있었다. 선진국에서 보면 파이와 복지를 동시에 이룩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게 된 것이다. 종합하자면 늦게 출발 한데다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하지 못하였다.

물론 기본적인 제도들은 우리도 갖고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서양에서 갖춘 4대 보험을 갖추고 있고 영세민 생활보호사업도 제도화 되고 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법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제도가 완성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제 이 글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시행되어온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된터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대두된 생산적 복지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복지의 기본선인 최저생계비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는지 등, 선진 외국의 복지정책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이 그 시행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행 1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점검함으로써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변천

1. 의 의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성장 후 복지의 논리와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복지이념으로 분배에는 소홀하였으며, 기존의 빈곤정책 또한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구호적 성격의 단순 생계지원 대책이었다.

그러나, 97년 말 시작된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대량실업과 가족해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된 바, 즉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비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생활의 보장이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 개인주의화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약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지책임은 증대되어 결국 복지재정지출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게 되었으며, 이에 서구의 복지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로운 사회변화의 경

향에 적합한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생산적 복지이념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경과를 살펴보면,¹⁾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을 하고,
- 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외 102인)
- 99년 6월 21일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힘.
- 99년 7월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외 131인)
- 99년 8월 12일 본회의 의결,
- 99년 9월 7일 공포(법률 제6024호)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을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2. 연 혁

(1). 생활보호제도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 생활보호사업

1961년 - 생활보호법의 제정

1982년 - 생활보호법의 전문 개정

1982년 - 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4) p.7.

2) 보건복지부, 앞의책 p.5~6.

- 생활보호자를 종전의 영세민, 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활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
- 1987년 - 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선 읍, 면, 동에 배치 시작
- 1998년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
- 1999년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

○ 생계보호

- 1961년 - 생활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생계보호 실시
- 1984년 - 직권보호주의에서 신청보호주의로 변경하여 조사시 누락자나 신규해당자에 대한 보호가능
 - 거택보호자 자격요건 완화
- 1996년 - 차등급여제 최초 도입
- 1999년 -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자는 생계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구학적 보호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함

○ 의료보호

- 1961년 - 생활보호법의 보호내용의 하나로 의료보호가 명기
 -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를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독립시켜 1978년부터 생활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호 실시
- 1986년 - 자활보호 유사자를 의료부조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호를 실시
- 1994년 - 의료보호자 분류에서 의료부조 분류를 폐지

○ 주거보호

- 1989년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발표 및 추진
- 200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보호 프로그램 별도 규정

제 2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교육보호

- 1979년 - 생계보호 급여의 일환으로 중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지원
- 1982년 -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교육보호를 생계보호에서 분리하여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
- 1987년 -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도 수업료, 입학금 지원
- 1996년 - 인문고생 학업성적 상위 30%에게 지원
- 1997년 - 인문고생 전원에게 지원 확대

○ 직업훈련

- 1982년 -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훈련사업 실시
- 1993년 - 각 부처에서 행해오던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 담당하게 됨으로써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도 노동부로 이관되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만 추천 위탁하게 됨

○ 자활지원센터

- 1996년 - 시범사업으로 도입 (5개소 지정)
- 1997년 - 5개소 추가지정, 생활보호법에 자활후견기관 관련규정 신설
- 1998년 - 7개소 지정
- 1999년 - 3개소 지정 (총 20개소 운영중)

○ 취로사업

- 1974년 -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 1975년 -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
- 1980년 -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
- 1985년 -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 1994년 - 지방자치단체로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가 이전됨
- 1998년 -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재추진

○ 생업자금융자

- 1982년 - 생활보호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융자제 시행

○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사업

1982년 - 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와 저소득층의 지방정착을 지원하는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사업 실시

1990년 - 이주사업 시행중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조정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통일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음.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함(법 제2조제8호).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선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법 제2조제9호).

2)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 지원액을 합한 금액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급여수준의 증가를 꾀함.

3) 자활지원서비스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자활지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구직안내·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간병 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을 조성하며,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고,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를 강구하고,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는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2000년 10월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5%,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 학생이 얻은 소득의 10%를 공제하고, 기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1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공제토록 함으로써 자활의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³⁾.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⁴⁾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 적 용 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생계급여등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연령기준 외에 lscp·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4) 보건복지부, 앞의책 p.11.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변천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 상 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자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재산 2,900만원(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2003년부터 실시) ○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2002년까지 유지)
급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택보호:의료비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지원 ○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애보호, 해산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임대료,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 교육, 해산, 장애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 획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수립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제 2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2001년 6월 현재 수급자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10월	2001년 6월	
	인원	가구수	인원	인원	가구수
계	1,745,187	728,738	1,488,764	1,502,869	711,411
서울	186,294	73,795	178,222	181,255	83,946
부산	117,282	45,985	112,276	113,822	53,606
대구	62,869	24,264	69,804	73,537	32,179
인천	80,641	33,460	70,941	69,565	31,938
광주	51,163	20,430	48,622	51,375	20,845
대전	40,562	16,031	42,792	43,707	18,169
울산	16,798	7,017	15,223	16,199	7,906
경기	285,891	115,449	206,538	209,063	98,554
강원	75,686	34,039	62,032	62,222	31,887
충북	63,531	26,929	56,915	57,815	26,153
충남	124,516	53,352	93,152	93,433	43,921
전북	127,496	54,835	122,104	121,913	56,103
전남	201,311	87,900	151,571	151,506	75,316
경북	166,045	72,129	135,108	134,789	67,911
경남	123,231	53,904	104,555	102,979	53,276
제주	21,571	9,399	18,909	19,689	9,701

※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99년의경우는 한시생보자 57만명이 포함된 숫자임.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으로서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된다⁵⁾.

1. 수급권자

(1) 부양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부양의무자에 관한 내용이 먼저 파악 대상이 되는 바, 첫째 부양의무자의 유무, 둘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그리고 실제 부양여부가 그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부양의무자 유	- 부양능력 유	- 부양이행	- 수급권자 ×
		부양불능,기피	- 수급권자 ○
			- 부양기피시 보장비용징수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 ○	-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무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무	- 수급권자 ○		

(2) 부양의무자 유무

1) 부양의무자의 범위(법 제2조5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5) 보건복지부, 앞의책 p.28~32.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거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수급권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호적등본(필요시 원적지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화상입력장치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현 거주지를 확인함으로써 부양의무자 유무를 확인한다.

3) 부양능력의 판별

(가) 부양능력이 없는 자

①수급자

②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이고, 재산가액이 재산 선정기준의 120% 미만인 자

③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고, 재산가액이 재산 선정기준의 120%미만인 자에 한함.

*일용근로자: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함

④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1, 2급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

⑤수급권자와 외손자녀 및 외조부모 등의 관계에 있으나 가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부양능력이 있는 자

①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인 경우

②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이 수급권자가구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을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인 경우

(다) 부양능력 미약자

①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이 부양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

이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이지만 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를 합한 액수의 120% 미만일 때는 재산기준으로 따져서
 -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이 기준의 120%보다 적을 때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나 부양비를 부과함
 -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이 기준의 120% 이상이지만 수급권자가구의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을 합한 액수의 120% 미만일 때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나 부양비는 부과함. 다만 부양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일 때는 재산기준으로 따져서
 -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이 기준의 120%이상이지만 수급권자가구의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을 합한 액수의 120% 미만일 때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다만 부양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
- ②출가한 딸 및 사위 중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되 부양비를 부과함.

4) 부양여부

- (가) 부양불능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실종선고가 진행중인 자, 행방불명이 확인된 자, 수급권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자 등의 경우는 이를 부양불능으로 본다.
- (나) 부양기피 : 양자, 양부모, 서모 등 혈연관계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음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등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2. 소득 및 재산기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이라는 용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그것이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시행규칙 부칙제1조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1조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에 대하여도 200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12월까지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으로 소득의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의 범위, 소득산출의 기준,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⁶⁾.

1) 소득의 범위

소득(법에서는 실제소득이라는 용어로 표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부양비,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로금 등(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과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금품과 국익 또는 공익보호에 공헌한 자중 생계곤란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6) 보건복지부, 앞의책 p.33~47.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조사·파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을 말하며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포함한다.

○ 상시근로자 및 임시직근로자의 소득파악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와 소득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최근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며, 위 전산자료의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을 조사한다. 그러나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경우는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의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로 얻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사자를 알선해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하며, 소득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격증소지여부, 관련분야 기술숙련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한다. 또한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기도 한다.

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나 시군구 취업알선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하며, 그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를 참조하되 특정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공사부문은 34,360원을, 제조업부문은 24,519원의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고 그 외의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은 공공근로 노임 19,000을 적용한다.

그리고, 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급여도 소득으로 산정 한다.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며, 그 소득에 대한 파악 방법으로는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한다. 이때 경작면적은 읍·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순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 연보를 참조한다. 그리고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 확인하며, 축산업 소득의 경우는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을 참조하여 산출한다.

○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며, 그 소득에 대한 파악 방법으로는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을 확인하며,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조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를 참조한다. 그리고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는 공제한다.

○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며, 그 파악방법은 수협이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

으로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 소득액 등을 파악한다. 특히 어가의 경우에는 어업의 소득으로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각각의 소득파악 방법에 따라 소득을 파악·산출한다. 그리고 총수입에서 소모적 비용은 역시 공제한다.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며, 그 파악방법은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한다. 그리고 행사,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의 경우에는 동종 유사 사업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 생활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실태 등을 통해 소득을 파악한다.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토지, 건물, 주택,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전세보증금·권리금 등을 받아 은행 등에 예치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한다.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월5만원 이상의 소득을 말한다. 그 파악 방법은 금융재산 조사방법에 의해 파악한 예금·채권·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 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한다.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로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하여 파악한다.

(라) 기타소득

○ 부양비

부양능력미약자의 경우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으로 산정한다. 이때, 부

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20%를 제한 금액의 50%로 하고, 출가한 딸 및 사위인 경우는 30%로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을 지원 받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원 받거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편부모가구에 속하는 경우와 부양의무자 가구내에 만성질환자 등 고액진료비 소요가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내에 입학금·수업료 등이 지출되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불능 상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은 부양비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적이전소득

친족이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으로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미약자로서 일정액의 생활비 지원이 있다고 보아 부양비를 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당해 부양의무자에게서 받는 사적이전소득에서 그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부양의무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집에서 대가(금전 또는 노동 등)없이 거주하며 숙식, 기타 필요 경비를 부양 받고 있는 경우 그 소요된 경비는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생활비 지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제외한다.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익 또는 공익보호에 공헌한 자중 생계곤란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한다. 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과 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생계보조비를 말한다.

(마) 추정소득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소득액을 산정하는 바, 주당 3일(월13일)에서 주당 2일(월9일)까지의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는데 일일 추정임금은 조건부수급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전직임금이나 평균임금은 월보수액을 30일로 나누어 일당 산출을 하며 최저임금은 1일 12,800원으로 계산한다.

다만, 근로능력있는 자 중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자 즉,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 참가가 곤란한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한 자는 추정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구직 등록 후 1개월이 지난 실업자, 공공근로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그 해당기간, 추정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등록장애인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소득산출의 기준

소득산출의 기준은 조사기준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주 및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소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한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조사기준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선정 및 급여의 기준소득은 과거 1년간의 소득조사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연간소득액이 된다.

3)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일정 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말하는 바,

공제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자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나)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장애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2002년부터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예정임

(다)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2) 재산기준

개별가구의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을 말하며, 행방불명·군인·교도소 수용·해외거주·보장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장단위인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2가지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바, 재산가액은 조사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한 재산액을 말하며, 그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한다. 여기서는 재산의 범위와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재산의 범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구원 명의의 재산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자동차,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 보험·금전신탁·주식 등과 현금·수표·어음, 가축·종묘·입목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을 합한 것을 말하며,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파악하는 구체적 방법을 보면,

(가) 건축물, 토지 등의 부동산

주택·건물·전·답·임야 등의 부동산은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또한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문중의 산, 공동재산 등).

(나) 자동차·선박 등

자동차 전산자료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한다. 그리고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 등) 1대에 한하여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장애인(1~3급)의 보철용 차량(2000CC미만)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며,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소유 내역을 확인한다.

(다)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분실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점포 등에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재산으로 파악한다.

(라) 금융재산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하며, 조사대상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임의의 은행을 선정하여 관할지역내의 본점 또는 지점 전산부로 조회의뢰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원과 1개월전 잔액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제출토록 한다.

(마) 동 산

가축·종묘·입목 등의 재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 등 생활 필수품은 제외한다.

2)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조사기준일 현재의 실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 금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금융기관융자금·공증된 사채 등)를 차감한 금액을 가구의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특히 부채의 경우

- 자가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당 건물 등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로 보아 차감하며, 동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주택 등의 재산가액이 임대보증금보다 작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재산가액 산정에 참조한다.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재산가액에서 감액하며, 이 경우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한 후 부채를 차감하며,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

거나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간의 부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을 인정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 소득 및 재산기준액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 및 재산기준액은 다음과 같다⁷⁾.

○ 소득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 평가액 (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1인증가마다 12만원증액 예) 7인가구:132만원 8인가구:144만원

○ 재산기준: 재산가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이상
재산(실거래가)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보건복지부는 실물기준을 지침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산의 실물기준》

먼저, 주택의 경우

- 전용면적 20평(66㎡)초과의 주택 임차(전세, 월세) 가구
- 전용면적 15평(50㎡)초과의 주택 소유가구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적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가능함.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미취학 아동, 치매노인, 질병·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등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워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면제 받는 가구 포함)

7) 보건복지부, 『홍보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진복지국가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00.8) p.7~8.

㉠가구원 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가구)

㉡주택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주택이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타 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읍·면지역 소재의 신축연도 15년 이상된 주택 및 **洞**지역의 20년 이상된 주택

*광역시 및 중소도시의 농촌洞으로서 개발제한 구역 등의 사유로 읍·면 지역보다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는 읍·면지역 기준을 적용)

㉣재산세(건축물분)비과세 주택 및 무허가 주택

㉤긴급급여 대상자(긴급급여 기간동안)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주택면적기준을 완화함.

㉦7인이상 가구: 6인가구에서 1인 추가시마다 1.7평(5.76㎡)씩 기준 증가(상한은 자가 20평, 임차 25.7평 이하)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가구는 아니나, 질병·장애 등으로 별도의 주거면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인당 2.7평(5.76㎡)씩 추가 인정

*와병 생활중인자(중증의 만성질환자, 중증장애, 치매노인) 또는 기계기구 설치(호흡기 장애아 등)가 필요한 자 등

다음, **토지의 경우**

- 농업종사가구 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 밭) 소유 가구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단위:ha)

· 경기1.42 강원1.48 충북1.48 충남1.49 전북1.59 전남1.45

경북1.24 경남1.07 제주1.46 인천1.46 울산1.29

· 서울1.42 부산1.07 대구1.24 광주1.45 대전1.49(인접 도의 평균 경지 면적 준용)

다만, 다음의 경우는 토지 면적기준 적용제외자에 해당함.

㉠가구원 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로서, 농업소득으로 병원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토지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경우
-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긴급급여 대상자(긴급급여 기간동안)

그리고, 오지의 폐경농지로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적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다음, **자동차의 경우**

- 승용 목적으로 자동차(승합차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출퇴근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는 승용 목적으로 보아 급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단, 다음의 경우는 선정 가능함.

㉢2000cc 미만의 장애인 보철용 차량

㉣15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질병(한센씨병 등), 장애 등에 따라 부득이 하게 사용하는 경우, 차량이 10년 이상된 경우

㉤배기량에 상관없이 도산·과산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의 수준은 수급자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하며(법 제4조제1항)구체적으로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제2항) 이로써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수급자간에 차등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객관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최저생계비 공표제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는 일반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매년 최저생계비는 전년도 12월1일 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법 제7조).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는 필수적으로 지급되며, 그 밖의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위와 같은 급여 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보장시설은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종교상의 행위를 강요할 수 없으며, 또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33조)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기초적인 생계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로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및 그 밖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8조). 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급여이며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로 지급된다.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차등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급여가 조건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즉,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9조).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되,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다(법 제10조).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법 제10조제2항).

2000년 현재 생계보호를 위한 현금급여로서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월 188,000원이,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월 147,000원이 지급되었다. 여기에는 의료보호비와 학비지원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2001년의 경우 1인당 생계급여 지원액 산출내역을 보면, 최저생계비(A)275천원. 평균소득(B)137천원. 타지원액(C)50천원으로서 생계급여액은 $A-B-C$ 즉 88천원이다. 이 산출내역에는 의료급여13천원. 교육급여12천원. 주거급여13천원. 자활급여3천원. 타 법령지원9천원이 C에 포함되어 있다.

2)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에 대한 수요를 급여의 종류로 추가하였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거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현금지급 대신 주택점검, 수선 등 현물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물서비스로 주거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법 제11조)

주거급여의 기준을 보면, 1~2인 가구의 경우 월 23천원, 3~4인 가구 월 37천원, 5~6인 가구 월 51천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도 있다(법 제12조).

지원 기준을 보면, 입학급과 수업료는 연도별, 급지별로 고지된 전액을 지급하고 교과서대는 1인당 연1회 학년초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4)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 급여를 보장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도 있다.(법 제 13조)

그 지원기준은 출산 여성에게 1인당 1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9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있다.

5)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하되,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법 제14조)

지원기준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료급여 1종)에는 구당 50만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료급여 2종)에는 구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한 급여로서, 금품이 지급되거나 또 대여될 수 있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대여되기도 한다. 자활급여는 궁극적으로 수급자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원은 필요한 경우 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법 제15조).

자활수급자에 대한 사업지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자활급여수급자들의 공동사업이 지원대상이 된다. 자활공동체에는 사업자금이 융자되거나 국공유지가 우선 대여될 수 있으며,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진다(법 제18조). 자활급여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과 특히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등이 이루어진다. 이밖에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역시 이루어진다. 자활후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비용이 보조되고, 국공유재산이 무상으로 임대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6조).

7)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내용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의료보험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동일하다.

1종의료보호대상자는 통원 및 입원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2종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 본인부담분은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그리고 진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다. 즉 먼저 제1차 진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는 정액으로 진료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비해 제1차 진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제2차 및 제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해당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 다만 이들은 저소득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과다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보호법은 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즉 본인부담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환은 무이자로 하고 있다.

제 2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3 장 생산적 복지

제 1 절 생산적 복지의 개념

(1) 복지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산적 복지

우리 사회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로 나타나는 대량실업, 중산층의 몰락, 가족해체 등의 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체제의 유연성과 위기 대응능력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도 그 틀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경제구조 조정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고방식으로 통합적 경제사회정책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은 경제와 복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 두 체계가 상호 상승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통합적 사고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경제와 복지가 분리되어 작동하는 두 개의 체계가 아닌 하나의 순환체계 속에서 운영됨으로써 복지부문에의 지출이 순환되어 다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투자되는 상호 상승적인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적인 중용의 정서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여 국가역할과 개인책임의 조화를 이뤄내고 이와 함께 시민사회를 재조명하여 참여민주주의의 활력을 부여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생산적 복지라고 한다⁸⁾.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생산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질을 고양하는 사회복지체계이다.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국가가 기초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연대감 제고 등 사회적

8) 정경배, 『생산적복지와 적극적 복지정책』(한국사회보장학회, 1999.9)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문, p.69~73.

효용을 증대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근로동기와 근로여건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2) 사회적 합의로서의 생산적 복지

국가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기꺼이 동의하는 사회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운영될 때 비로소 체계적인 조직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발전된 국가공동체일수록 이 목표와 행동준칙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형성되며 민주사회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를 가진다. 사회적 합의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을 담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왜 상호간에 연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그 존립의 의의를 부여하는 가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권위주의적·정부주도적 경제성장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배한 사회적 합의는 잘살아 보자는 것이었다. 이 합의는 정치의 민주화와 부의 형평적 분배를 등한시하는 가운데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관류한 사회적 열망은 정치적 민주화이다. 그렇다면 압축적 경제성장과 문민정부의 개혁정치를 거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사회적 목표이자 구성원들이 추구할 좌표를 담은 사회적 합의는 무엇인가? 현정부가 내세우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 이러한 사회적 목표일 수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직접적인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롭게 설정될 공동의 목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조직화·역동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중심 화두로서 생산적 복지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로서의 생산적 복지의 도출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극복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을 유도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위기에 대응하는 현실을 복지체계가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없는 국민복지의 발전과 개별 근로자의 노동에 상응하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는 대량실업 이후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해 현실의 복지체계의 방향성이 생산성과 분배의 원칙을 동시에 내포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생산성과 분배의 원칙은 서구의 고복지·비효율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복지에 따른 복지 의존성과 경제성장 저해요인을 극복하여 평등과 효율의 가치가 조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로서 생산적 복지가 대두된 것이다. 요컨대, 생산적 복지란 우리의 경제적 역량과 민주주의 성장에 따른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는 매카니즘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권리로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통해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유지하는 이 시대의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다.

제 2 절 생산적 복지의 역사적 유래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적 복지와 유사한 의미로 발전된 용어를 찾는다면, 노동연계적 복지(workfare),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그리고 노동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용어 혹은 제도들은 각 국가의 독특한 이데올로기적, 실천적 기반 위에서 행해져 왔으며, 따라서 구체화된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유사하나 전체적인 경제사회적 틀 속에서 해석되는 함의와 다른 경제·사회정책과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근로연계복지(workfar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7년 미국의 노동유인정책(Work Incentive Program:WIN)이 실시되면서이다. 존슨 행정부가 1964년에 선언한 빈곤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이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의 고부담이 일상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우려한 보수층이 내세운 대안이 Win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근로연계복지의 초기적 형태는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수급자의 접근 유인을 감소시키는 다소 반복지적이고 소극적인 의도가

포함된 의미로 사용된 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과 경제와 사회복지의 호순환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거시적인 경제차원에서 협력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서 스웨덴의 렌 모델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ALMP)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사회민주주의적, 조합주의적 거시경제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노사정의 거시적 협력구조 속에서 완전고용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평등, 사회적 연대와 경제적 효율의 적극적인 조화를 통해 1970, 80년대 황금기를 구가하는데 크게 기여한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유연성 증대를 요하는 생산구조의 변화와 생산방식의 전환, 그리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경의 약화와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와 이로 인한 자본의 이동,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사회지출의 압박과 이로 인한 국가정책의 위기 등의 요인으로 거시적인 합의구조에 기반한 사회민주적 조합주의의 현실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스웨덴의 경제위기와 실업률 급증 등이 이러한 사회민주적 조합주의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이후 두 번의 유가파동을 계기로 한 세계적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겪은 후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틈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수요측면의 케인즈이론 대신 공급측면의 통화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한 복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 가족에의 일차적 의존을 강조하고 잔여적 모형의 복지제도를 옹호한다. 1990년대 초반의 통독, 동유럽 공산국가의 붕괴와 더불어 자유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자명한 듯이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거의 대부분의 EC국가에서 집권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이러한 자유주의의 승리가 일시적인 현상임을 반증하고 있다. 즉, 이는 여전히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견재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축소지향의 사회정책에 대한 재고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전술한 배경들로 인해 기존의 경제적 효율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사회복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소 신자유주의적 용어로 간주되어 오던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는 동시에 효율과 평등, 개인적 자유와 사회 통합간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신노동당의 제3의 길과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노선의 표방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미국의 클린턴도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던 복지삭감을 재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제도적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로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일하기 위한 복지(welfare to work 또는 welfare for work)를 들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자가 추구하는 이전의 단순한 노동연계적 복지가 아닌 궁극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 사회보장, 교육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되는 사회복지를 구상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컨대, 생산적 복지가 목적적·실천적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으며, 외국의 예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띤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각 국의 사회경제적·이데올로기적 지향성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 목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제 3 절 생산적 복지와 근로의 연계

1.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에 대한 논의의 대두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근로와 연계시켜 복지급여를 행하는 이른바 근로연계복지 혹은 일을 통한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논리적 기반의 일단으로서 이 개념이 원용되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진된 장기실업자를 공공부조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구상과 관련하

9) 정경배, 앞의 발표문 p.90~92.

여서도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의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원형은 미국의 복지개혁정책에서 사용된 각종 Workfare 프로그램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정작 이 제도의 본원지인 미국에서는 아동부양가족지원프로그램(AFDC Program)대상자에 대해서만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취업가능성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취업기회는 언제나 주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단순한 구직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Workfare의 주된 내용이라는 사실이 환기되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개념

근로연계복지를 협의로 정의하면 사회에 대한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는 복지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하여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근로연계복지는 복지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일을 하게 만든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개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의 의미가 다양해진 원인은 급여의 전제로 요구하는 노동력 제공의 범주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취업은 물론이고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벌이는 구직활동, 공공기관에서의 업무보조 등도 노동력 제공의 범주에 속한다. 이 밖에 복지수급자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도 노동력 제공의 범주에 포함되며 심지어 근로연계복지 대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그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탁아행위도 이러한 노동력 제공의 범주에 속한다. 이 밖에 복지수급자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을 더 원하게 권장하는 제반 정책적 수단과 아동을 가진 복지수급자의 취업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탁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광의의 근로연계정책에 포함된다.

3.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의 한계와 함축적 의미

1960년대 후반 서구에서 20세기형 복지국가체제가 번성의 극에 달했을 때 이에 저항한 보수층은 복지급여와 근로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배태하

였다. 출현 당시에는 복지급여에 우호적이었던 시대적 대세에 밀려 제대로 발아조차 하지 못했던 근로와 복지의 연계안은 1980년대 초 신보수층의 득세와 더불어 부상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서구의 주도적 복지이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복지와 근로를 연계시키려는 이 시도는 애초의 기대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빈곤계층의 복지의존성을 해소하고 취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원조할 목적으로 다양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을 미국의 각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창안하여 시행하였지만 그 결과는 별무소득이었던 것이다.

저조한 자활유발효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서구 사회의 지지는 신보수주의의 물결 하에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복지와 근로를 연계 짓는 그 자체의 상징성이 보수주의적 이념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즉, 복지와 근로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복지권의 행사에 사회적 의무행이 뒤따른다는 관념을 심어주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복지요구가 자제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계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제도가 논의될 소지가 없는 것이고, 공공부조제도가 시행되고 있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한정적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근로연계 복지제도는 논의 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공공부조 대상으로 됨에 따라 복지와 근로의 연계는 이제 그 첫 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우리 나라에서 막 시작한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이 외국에서 시행되었던 내용을 답습하는 한 빈곤한 복지수급자의 자활을 가져오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단지 복지수급권의 상대성과 자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사회전체에 복지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과 복지를 결부시켜 실질적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⁰⁾.

10) 정경배, 앞의 발표문, p.122~123.

제 3 장 생산적 복지

제 4 장 국민복지 기본선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 중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일 것이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시혜적 수준에 머물러 생산성과 복지 중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수준을 제공하지 못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반해 생산적 복지는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을 통해 생산성과 복지간의 상호 상승 작용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제 1 절 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국민복지기본선은 한 사회가 공적 제도를 통해 개별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도록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의 수준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국민복지기본선이란 역사적 산물로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 의미에서 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 정도와 정치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복지기본선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유형은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유형이면서 다른 하나는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개념적 차이와 주요 원리를 기본선의 수준, 보장의 책임 주체, 재원의 부담 방식, 주요 적용 대상, 권리의 성격 그리고 제도의 운영 원칙 등 측면에서 살펴보면

- 기본선의 수준 : 최저선에서 제공해 주는 급여 수준은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할 수준이며 적정선의 개념은 의료보험의 수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급여 범위는 협소한 저급여 수준이며 적정급여로의 발전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보장의 책임 주체 : 최저수준의 보장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게 있으며 급여 제공의 주체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책임주체는 국가, 기업 혹은 기관이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적 공동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재원의 부담 방식: 최저선의 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재원의 부담은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는 국가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 기업, 개인 등의 사회적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적정선에서의 자원 부담방식은 책임 주체별로 재원이 분담되어야 한다.
- 주요 적용대상: 최저선의 주요 대상은 추상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회·인구학적 조건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계층이 되어야 한다. 적정선의 주요 대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시장임금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적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저소득 이상의 계층 혹은 위험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예:사회보험)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권리의 성격: 사회복지권에 대한 두가지 해석을 적용시 최저선의 경우는 구체적 권리의 성격으로, 적정선은 추상적 권리의 성격으로 대비시켜 볼 수 있다. 즉, 최저선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이나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적정선의 경우는 그러한 청구권이 성립되기 힘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제도의 운영 원칙; 국민복지기본선이 최저선이건, 적정선이건 간에 수혜자와 가입자의 참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입자나 수혜자의 참여는 첫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를 집행, 관리하는 기관이나 제도의 운영과정에 가입자 참여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국민복지기본선의 설정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청구권을 갖는 국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의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복지기본선의 정립은 주요 생활영역에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이므로 만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 실업자층의 각종 사회적 위험을 방어해 주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민생활최저선의정립은 제도별로 발전된 부분과 낙후된 부분을

선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 과제와 항목을 뚜렷하게 부각시켜 줄 수 있다. 셋째, 최저선 뿐만 아니라 적정선을 정립해 봄으로써 한국사회가 질적 성숙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을 정립하여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각 부문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¹¹⁾.

제 2 절 소득보장

소득보장이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득상실의 사회적 위험에는 근로능력 및 기회의 상실정도에 따라 첫째,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경우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 둘째, 근로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질병, 사고의 위험 셋째, 근로기회를 상실한 경우로 실업의 위험 넷째, 근로보상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의 위험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빈곤한 상태에 놓여진 빈곤의 위험이 있다.

소득보장의 기본원칙으로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포괄성은 적용대상 및 적용위험의 포괄적 적용을 의미한다. 즉 소득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하는 측면이다. 둘째, 충분성은 개별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느냐의 문제로 이는 공간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경제의 발전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형평성은 특정시점과 특정지역의 사회적 인식기준으로 볼 때 소득보장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 필요성에 비례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가 하는 측면과 소득보장 비용의 부담측면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람이 부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넷째, 효율성은 소득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가 얼마나 비용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다.

11) 정경배, 앞의 발표문 p.105~106.

변재관 외, 『한국의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12) p.72~86.

국민복지기본선으로서 소득보장 수준의 설정에 있어서 보장의 성격이 결과적 빈곤에 대한 개입인지 혹은 빈곤원인의 예방을 위한 개입인지에 따라 두 가지 보장수준이 존재한다. 보장의 성격이 결과적 빈곤에 대한 개입일 경우에는 주로 무기여를 특징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보장수준은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보장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보장의 성격이 빈곤원인의 예방을 위한 개입일 경우에는 사전적 기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험 형태 혹은 무기여로 귀속적 욕구에 따른 수당 형태 혹은 법적 규제형태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가 및 가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되고, 보장의 책임은 사회적으로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¹²⁾.

1. 우리나라 소득보장 체계의 특징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소득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으나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제도와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둘째, 대상자에게 필요한 소득보장을 위한 적정한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대상자의 요구수준은 높지만 수급자와 부담자의 형평을 위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예산의 한계가 있다 하여도 최소한의 보장선은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촌지역 자영자만을 강제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지역 자영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넷째,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다. 일반세원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재원한계로 저 급여 수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도 고 급여 저 부담 구조의 장기적 재정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마련 없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은 개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¹³⁾.

12) 변재관외, 앞의 연구보고서, p.92~95.

13) 변재관외, 앞의 연구보고서, p.127.

2. 소득보장체계상 과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소득보장제도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불완전하지만 지속적으로 제도를 도입·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IMF사태를 계기로 경제가 고도 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자원의 공급은 위축되는 반면 인구의 노령화, 가족해체 등으로 자원의 수요가 팽창되는 모순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심각한 수요초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요초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가장 큰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득보장 메카니즘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축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의 기본 틀에 해당하는 공공부조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일반적인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나가고, 공공부조제도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계층을 위한 보완적인 제도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공부조라는 기본축 위에 각종의 다양한 소득보장수요에 부응하는 수당제도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충적인 제도를 뒀으로써 완벽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최저소득보장 수준의 설정

최저소득보장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호급여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공공부조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저소득보장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저생계비로 책정되어야 한다. 1차적 최저소득보장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이 기준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¹⁴⁾.

14) 정경배, 앞의 발표문, p.110.

4. 적정소득보장 수준의 설정

국민복지 기본선으로서의 적정 소득보장수준은 국민복지기본선인 최저생계비와 같이 절대액의 개념과는 달리 각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으로 적정 소득보장수준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¹⁵⁾.

15) 정경배, 앞의 발표문, p.112.

제 5 장 주요국가의 생활보장제도

제 1 절 개 관

1995년 이후 서구 선진국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이들 변화는 「고용과 연계된 복지」 또는 「고용과 연계된 적극적 복지」 정책으로 집약된다. 여기서 고용과 연계된 적극적 복지정책이란 복지와 고용을 연계시켜 복지 수혜를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생산성과 국민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개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 즉, 고용과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의 특징은 경제위기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가 빈곤층으로 다시 전락하는 때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프로그램, 그리고 영국의 뉴딜(New Deal)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외국의 유사 생산적 복지의 예를 보기로 한다¹⁶⁾.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생활보호법이 있어 이를 전문 번역하여 이 글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제 2 절 스웨덴

스웨덴은 전후 조합주의의 한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스웨덴은 가장 평등주의적 재분배를 실현한 나라중의 하나로, 노동계급이 정부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력을 동원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둔 나라이다. 고도의 자본집중의 급속한 산업화의 맥락에서 스웨덴의 노동계급은 미국과 같이 계급의식성과 연대성이 파편화되는 경향이 있는 업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로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스웨덴을 지배하는 소수의 대규모 기업들은 집중화된 고용주조직을 설치하였다. 비슷하게, 고도로 집중화된 경제는 집중화된

16) 정경배, 앞의 발표문 p.92~104.

노동자 조직을 고무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중앙집중적 체계는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경제협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와 정부이전 정책이 아니다. 스웨덴 복지 국가기구의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인플레이와 실업의 트레이드 오프를 감소하는데 목표를 둔 매우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는 노동시장과 임금정책의 발달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평등화하고 높은 수준의 경제생산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1) 렌모델(Rehn Model)

스웨덴 국가정책의 목표에는 완전고용, 경제성장, 경제적·사회적 평등의 확대, 물가안정, 공정한 배분, 지역간의 균형 그리고 쾌적한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완전고용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結晶은 LO(Landsorganisation I Sverige)의 경제학자 요스타 렌(Josta Rehn)과 루돌프 마이드너(Rudolf Meidners)에 의해 1940년대 말 고안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LO와 사민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경제운영에 관한 이러한 전략적 접근방식은, 생산성 증대는 실질임금이 증대되고 복지국가가 확대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렌모델은 인플레이억제와 완전고용의 문제를 노동자의 임금동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정정책으로 인플레이를 막고 연대임금정책으로 임금노동자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실업문제는 해고된 노동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재교육, 재배치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렌모델은 사민당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민당 정부의 역할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동력 수요와 노동력 공급에 개입하는 노동시장 개입이었다. 노동력 수요가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과잉인 상태가 공존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복잡적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국가가 재정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정보제공, 이사비용 제공, 주택자금 지원, 직업재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사민당은 기존의 국가노동시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을 관리하는 전권을 부여하였다. 국가노동시장위원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노동시장 서비스, 노동력 이동, 실업수당보조와 같은 선택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일자리는 복지지출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국가부문의 확대로 경제활동인구의 약1/3이 국가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렌모델은 임금이란 기업주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작업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이러한 원리의 실행은 노동운동으로 하여금 소득정책의 모순을 회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우선 보다 합리적인 임금구조가 만들어짐으로써(노동자들이 작업의 성격에 기초한 임금격차를 보다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임금경쟁이 수그러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임금격차의 완화는 기업의 이윤을 일정한 기업에 선택적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생산성의 증대를 촉진한다. 한편 저임금부문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일치된 노력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과 부문의 이윤폭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기업과 부문은 생산을 합리화하거나 조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 고임금 부문에서의 임금억제는 보다 효율적인 기업과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라는 독특한 의사결정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단일하고 대표성을 띤 중앙집권적인 노-사 대표체의 존재, 노조의 강력한 조직력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등이 스웨덴식 모델의 전제조건이었다.

중앙화된 사용자와 노조대표체 간의 국민적 차원에서의 임금협상과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이라는 임금일치를 위한 노력은 노동자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한 희생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하다. 1970년대까지 연대임금정책은 스웨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 결과 스웨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실업률도 2%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전술한 바와 같이 렌모델은 연대임금정책과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도퇴된 기업의 노동자들을 재흡수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경제정책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활성화 원칙(Activation Principle)』이다. 활성화 원칙이란 당시로서는 스웨덴 특유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자가 수동적으로 실업수당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신 이들을 생산적인 일에 종사시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나 실업자 자신들에게도 더 유익하고 바람직하다는 정책의 기본 틀을 말한다. 노동시장정책의 기본 정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의 기술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로 거주지와 직장간의 지리적인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개개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접합시키는데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크게 네 가지 범주(취업 서비스, 노동력의 공급에 영향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노동력의 수요에 영향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실업보험과 현금지원)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범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 취업서비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프로그램은 취업알선서비스와 직업보도상담 그리고 고용훈련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취업알선서비스의 주된 과업은 구직희망자에게 가능한 빨리 적절한 직장을 알선하는데 있다. 실제로 모든 사용자들은 10일 이상 결원된 일자리에 대해 반드시 취업서비스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고용사무소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은 구직희망자에게 적절한 고용훈련, 직업재활, 또는 직업상담프로그램을 알선하는 일이다. 또한 고용사무소는 사용자들에게도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프로그램은 고용훈련과 재배치지원금 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1990년대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 가량이 고용훈련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고용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상황과 노동력의 수요에 의해서 그 범위와 목적이 정해진다. 1990년대에는 제조업, 보건, 컴퓨터, 요식업계의 숙련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노동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고용훈련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재배치 지원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구직자가 노동시장적인 이유로 이주해야할 경우 재배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노동력의 수요에 영향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노동력의 수요에 영향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10가지 정도의 각종 제도적 시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시직을 통한 실업구제사업

- 실업보험 수혜기간이 만료된 실업자들에게 임시직 마련
-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서비스부문(보건의료, 노령자치료, 지방행정 사무 보조 등)
- 임시직은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임금과 휴가비는 해당 직종의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함

⇒대체근로자에 대한 보조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휴직한 정규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복지기여금을 면제해주는 간접보조제도

⇒신규채용보조금

-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18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용자에게 6개월동안 신규채용자 급료의 60%보조
- 프로그램의 범위는 노동력의 수요 여하에 따라 변함

⇒자영업 창업 희망자를 위한 지원제도

-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건실한 계획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기를 원할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지원금 지급

제 5 장 주요국가의 생활보장제도

- 고용사무소는 이들을 위해 여러 과정의 훈련프로그램 마련
- ⇒고용개발 프로그램
- 장기실업이 예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과거 경험과 지식을 고려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훈련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하게끔 하는 제도
- ⇒청년 고용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 사업장 견습직 : 노사협약에 의해 6개월간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사업 현장에서 17~19세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시책, 이 기간동안 급여의 60% 지원금보조
- 청년도제제도:18~25세(고2 수료생 청년)을 대상으로 통상 6개월간 임시직으로 견습, 상담, 현장훈련을 받음, 18~19세 청소년에게는 하루 239크로나, 20~24세 청년에게는 하루 338크로나 지급, 원거리 청년을 위해 교통비 특별지원
-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 개별화, 최적화, 유연화의 원칙 적용
- 장애인 고용기업에 임금보조, 장애인 수발에 필요한 지원, 장애인이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위한 지원 등
- ⇒망명자와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 이민자로 처음 취업한 사람은 임금감축 없이 근무시간에 스웨덴어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이민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임금의 50~85%보조, 특수직분야의 경우 12개월까지 연장(임금의 50%)
- 피난민수용소에 머무는 사람에게 직장 소재지 혹은 훈련프로그램 실시 지역에 주거 마련
- ⇒직업재활프로그램
- 병가 중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들 및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각종 재활서비스, 상담, 및 검진 실시
- 사회보험사무소 : 조정 및 연결
- 노동시장행정처 산하 재활 및 상담연구소 ; 서비스 제공

제3절 미국

(1) 1960년대 노동연계적 복지 프로그램과 신보수주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7년 미국의 WIN(Work Incentive Program)이 실시되면서이다. 존슨 행정부가 1964년에 선언한 『빈곤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이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의 고부담이 일상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우려한 보수층이 내세운 대안이 WIN 프로그램이다. WIN은 AFDC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돌보는 최연소 아동의 나이가 6세 이상이면 아동의 부모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하고 만약 직장이 주어지면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주정부는 AFDC 급여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의 미국사회는 시민권운동(the Civil Right Movement), 복지권 운동(Welfare Movement) 등이 한창 고조되어 복지급여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매우 호의적인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복지급여를 지급하겠다는 WIN 프로그램은 복지제도를 옹호하는 학자들로부터 복지의 권리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정책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야유하는 의미에서 즉, Welfare를 훼손하는 개념으로서 Workfare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Workfare의 기원이다. 복지에 대한 시민적 지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WIN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었다. 더욱이 WIN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었던 까닭에 적극적으로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정부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수급자가 주어진 직장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복지수급을 제한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근로연계복지제도로써의 WIN 프로그램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조치 1981년에 입안된 『지역사회 근로경험 프로그램』(Community Work Experience Program:CWEP)이다. CWEP에 의하여 주정부는 AFDC 수급자들에게 수급을 위한 대가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또한 CWEP는 AFDC 수급자들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입안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전반

적으로 보아 CWEP가 AFDC 수급자들로 하여금 고용시장에 나서도록 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몇몇 주정부에서 시도한 실험적인 고용촉진 프로그램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1980년대 이후의 노동연계적 복지 프로그램들

1988년에 제정된 가족지원법(The Family Support Act)과 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1990년의 『직업기회와 기본기술훈련 프로그램』(JOBS : The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Program)은 AFDC 프로그램의 근로연계성을 더욱 강화한 입법이다. JOBS 프로그램은 이전의 WIN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AFDC 수급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및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취업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수급자들을 징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주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JOBS 프로그램은 AFDC 프로그램의 주된 성격을 소득유지에서 근로촉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7년에 실시된 WIN을 비롯하여 CWEP, JOBS로 이어져 오는 근로연계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AFDC 수급자들의 취업을 통한 자활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적인 증거로 1960년 전 인구의 1.7%이던 AFDC 수급자가 1994년 현재 전 인구의 5.4%로 늘어난 사실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근로연계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인구가 AFDC 수급의 대열에 들어 왔을지도 모른다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근로연계프로그램들이 최소한 단기간 내에 복지수급자 수를 현저히 축소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근로연계프로그램이 복지수급자의 숫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자 보다 직접적으로 복지수급자수를 줄이고자 의도한 입법이 1996년에 제정된 『개인책임과 근로기회 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에 기초한 『빈곤가구 한시부조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TANF)이다. TINF는 기존의 AFDC 프로그램을 대체한 것인데 일생에 걸쳐 합계 60개월까지만 아동부양비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기간을 한정짓고 있고, 수급개시 이후 2년이 지나면 아동부양 부모가 반드시 노동력 제공 활동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TANF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과 연계된 복지제도인 TANF는 기존의 공공부조 가운데 저소득가정부조(AFDC), 긴급부조(Emergency Assistance), 고용 기회 및 기본기술훈련(Job Opportunity and Basic Skills:JOBS)을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다. 복지개혁법의 타이틀에 해당하는 TANF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¹⁷⁾.

- 1996년부터 2002까지 주정부로 하여금 피부양아동이 있으면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요보호가정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일시부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승인된 TANF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격을 갖춘 가정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을 지원한다. TANF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격조건을 갖춘 가정에 대해서 한정된 기간 동안 지원을 통하여 복지에 대한 의존상태를 종식하고 자활을 꾀하도록 혼외임신 및 출산을 감소시키고 양부모 가정을 유지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연방지침에 따르면 TANF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참여해야 하는 근로, 직업교육 및 관련활동을 명시하고 참여를 강제해야 하고, 아동양육강제이행 프로그램과 아동보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정 및 실행을 포함해야 한다.

- 주차원에서 TANF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996년 이전까지 연방정부의 권한이었던 기존의 AFDC 프로그램의 급여기간, 급여수준 및 그 밖의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이 1996복지개혁법에 의해서 주정부로 이양되었다.

- TANF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주정부가 판단하기에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급여를 받기 시작한지 24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주정부가 명하는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취업을

17) 정경배, 앞의 발표문 p.99.

정경배, 『한국형 복지경제모형과 정책방향』(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6)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문, p.52.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 TANF 프로그램 수급기간은 일생에 통산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모든 주는 오는 2002년까지 복지수혜자의 50%를 근로하게 하거나 복지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정부는 2005년까지 해당 주의 사생아 및 복지수혜자의 수를 어느 수준까지 감소시킬 것인지 정하고 이를 수치화된 연간 목표량으로 제시해야 한다. TANF 수급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주에 대해서는 그 주가 2002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ANF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며, 주마다 수급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AFDC 프로그램의 수급자격 조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이 주에서 정한 표준 필요액의 85%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액이 1,5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단,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한 대까지의 자동차, 그리고 장례비용은 자산에서 제외된다.

수혜자들은 주당 20~35시간을 근로해야 하는데, 편부모의 경우, 첫 해 동안 주당 20시간을 그리고 2000년에는 30시간을 근로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는 주당 35시간을 근로해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이 있으면서 적절한 아동양육서비스를 찾지 못하거나, 1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을 가진 편부모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만일 피부양아동이 없는 부모가 요구 받은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나 설명이 없이 주정부가 정한 부모 원조나 아동양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TANF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미혼모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성인의 감독이 가능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한하여 TANF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년의 복지개혁법은 TANF 프로그램 수혜자를 시민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조차도 의료부조인 메디케이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혜택에 대해서는 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에 거

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TAFN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종족을 위한 가족원조금을 제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제4절 영국

(1) 대처주의의 유산과 신노동당의 제3의 길

영국은 구빈법과 자유주의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도 베버리지 원칙에 충실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대표적인 국가로 꼽혔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1979년 집권한 대처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과감하게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신보수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었다¹⁸⁾. 이후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주택, 연금과 의료,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서의 과감한 민영화와 지방정부 및 개인에게로의 책임이전이 이루어졌으며, 경제 영역에서도 또한 세계의 개혁과 규제의 철폐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 책임이전과 자유화는 실질적인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불평등만을 악화시킴으로써 두 개의 국민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결국 대처정부에 이은 메이저 정부의 보수당은 노동당 토니 블레어와의 선거경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영국의 사회복지지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국의 신노동당은 이전 사회복지체제로의 복귀 대신 새로운 세계정세와 변화된 국내 상황에 조응하기 위한 새로운 길 즉, 『제3의 길』을 천명하며,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제3의 길은 기존의 수요중심의 사회복지에서 공급중심의 사회복지로, 그리고 사후적 복지 대신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복지체계를 내세움으로써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길은 이러한 측면에서 급진적 중도, 활발한 시민사회,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적 국가 등을 천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노동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다.

18) 정경배, 앞의 정책토론회 발표문 p.100~104.

(2) 노동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들

영국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사회보장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노동유인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급자들이 복지 의존에서 벗어나 하루라고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에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30시간 부가 급여(30 Hour Premium)
- 아동양육 보너스(Child Maintenance Bonus)
- 고용재활 프로그램(Employment Rehabilitation Programme)
- 신속한 아동부양 저소득 가족급여(Faster Family Credit Awards)
- 주택수당과 지방세 감면급여의 연장제도(Housing Benefit/Council Tax Benefit Extended Payment)
- 피고용 일시불(Jobfinder's Grant)
- 직장알선(Jabmatch)
- 고용주 국민보험 기여금 면제(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holiday for employers)
- 비아동부양 저소득 급여(New in-work benefit pilot: Earning top-up)
- 근로복귀 보너스(Back to Work Bonus)

(3) 뉴딜 프로그램

최근에 구상되어 실행되고 있는 뉴딜 프로그램은 영국의 『노동을 위한 복지』 구상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이 근로 가능한 계층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여긴다. 또 수혜의 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수혜가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생활에 쫓아든 미래의 세대에 큰 충격이 될 모델로서 뉴딜을 제안한 것이다. 1997년 7월 2일 영국정부는 민영화된 공사의 초과이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뉴딜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뉴딜은 청년실업자들로 하여금 근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1998년 1월부터 Pathfinder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

산되었다.

뉴딜은 구직급여를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진행은 도입단계, 뉴딜옵션, 추수단계의 3단계를 거친다. 도입단계에서는 청년들은 직업을 준비하고 접근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뉴딜 상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사정하고 계획을 짜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준다. 많은 청년들이 이 단계에서 직업을 찾으며, 이 시기에 청년들은 많은 준비를 할 시간을 갖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의욕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고용하게 된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 직업경험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뉴딜은 자신감과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18~24세 청년들을 위한 선택권은 자원봉사영역, 환경개선영역, 전일제교육과 훈련이다. 편부모를 위한 뉴딜은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의 자녀를 두고 소득보조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된다. 뉴딜프로그램에 참가할지 여부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 25세 이상의 뉴딜은 2년 이상의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뉴딜 상담자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는 계획을 구상하고, 보조금이 동반된 고용이나 교육, 훈련기회 등의 영역을 연계해 준다.

이전 계획들은 낮은 질적 수준과 교육 및 훈련 요소의 미비로 인해 실패했으나 뉴딜은 높은 수준의 옵션과 사업성을 겸비한 프로그램이다. 공급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뉴딜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층의 노동기술과 훈련을 증진시키고 구직활동을 지속하도록 도움을 준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 가치있는 노동을 제공하여 광범위한 사회 및 환경적인 목적에 부응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기단계(4개월)

- 구직급여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신청한 상태인 18~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 개별상담가가 각 참가자마다 지정되고 개별상담가는 뉴딜참가자에게 직장을 알선하는데 주력
- 초기단계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직장을 구하도록 돕는 것임

○ 뉴딜옵션단계(6개월)

- 초기단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참가자는 개별상담가와 협의하여

다음 네가지 뉴딜 옵션 중 한지기를 선택

첫째, 임금보조가 이루어지는 직장 선택(Subsidized Job) : 뉴딜 참가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피고용인 일인당 1주에 60파운드의 임금보조가 제공·뉴딜 참가자로서 고용된 피고용인은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짐

둘째, 자원봉사활동 선택(Voluntary Sector) :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할 경우에도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대료 보조와 지방세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셋째, 환경감시단 활동(Environment Task Force) :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음

넷째, 교육훈련 선택(Full-Time Education and Training) : 대개 2급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 참여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구직급여와 임대료보조 및 지방세감면혜택을 받음

○ 추수단계

뉴딜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뉴딜기간 동안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 적절한 직업을 구하도록 또는 새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

제 5 절 일 본

(1)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본원칙

일본의 경우 “일본국헌법 제 25조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함께, 그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의 원칙, 제3장 보호의 종류 및 범위, 제4장 보호의 기관 및 실시, 제5장 보호의 방법, 제6장 보호시설, 제7장 의료기관, 개호기관 및 조산기관, 제8장 피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제9장 불복

신청, 제10장 비용, 제11장 잡칙 등 총11개장 8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모든 국민은, 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무차별하고 평등하게 받을 수 있음”을 기본이념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최저한도의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법 제1조 내지 제3조).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일단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립되어 있다. 즉 국가가 부여하는 생활보호는, 생활이 곤궁한 자가, 그의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능력 기타 모든 것을, 그의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는 점, 아울러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조는, 모두 이 법률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임이 선언되어 있다(법 제4조). 일본에 있어서의 생활보호는 요보호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의 동거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⁹⁾.

일본에 있어 생활보호의 기준과 정도는 일본의 보건복지부장관인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측정한 요보호자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그 가운데, 그 자의 금전 또는 물품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행한다²⁰⁾. 이 경우 생활보호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그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²¹⁾.

(2) 생활보호의 종류와 그 범위

일본의 생활보호의 종류는 ①생활부조, ②교육부조, ③주택부조, ④의료부조, ⑤개호부조, ⑥출산부조, ⑦생업부조, ⑧장제부조 등으로 구성된다.

19) 다만, 요보호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 때에는, 보호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법 제5조 단서

20) 다만 이 경우 기준은, 요보호자의 연령별, 성별, 세대구성별, 소재지역별 기타 보호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요를 충족함에 충분한 것으로서, 이것을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21) 다만, 세대단위로 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정할 수 있다. 법 제10조.

첫째, 생활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의식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법 제12조).

둘째, 교육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①의무교육에 수반하여 필요한 교과서 기타 학용품, ②의무교육에 수반하여 필요한 통학용품, ③학교급식 기타 의무교육에 수반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제13조)

셋째, 주택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①주거, ②보수 기타 주택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제14조).

넷째, 의료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①진찰, ②약제 또는 치료재료, ③의학적 처치, 수술 및 기타의 치료와 시술, ④주거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상의 관리 및 그 요양에 따른 시중 기타의 간호, ⑤병원 또는 진료소에의 입원 및 그 요양에 따른 시중 기타의 간호 등을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제15조).

다섯째, 개호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개호자²²⁾ 및 요지원자에 대하여 ①주거개호(주거개호지원계획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함), ②복지용구, ③주택개수, ④시설개호 등을 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제16조).

여섯째, 출산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①분만의 보조, ②분만전 및 분만후의 처치, ③탈지면, 가제 기타 위생재료 등을 급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생업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①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료, ②생업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 ③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 등을 급여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다. 다만, 이에 의하여, 그 자의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립을 조장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덟째, 장제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①검안, ②사체의 운반, ③화장 또는 매장, ④납골 기타 장제를

22) 개호보험법(平成 9 年<1997>法律第123號)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개호자를 말함

위하여 필요한 것 등을 급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생활보호 체계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다. 즉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都道府縣의 知事와 市長 및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복지에 관한 사무소를 관리하는 町村 즉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長은 ①그의 관리에 속하는 복지사무소의 소관구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는 요보호자와 ②거주지가 없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요보호자로서, 그의 관리에 속하는 복지사무소의 소관구역 내에 현재지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결정하고, 실시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제19조). 다만 일본의 보건복지부장관인 후생노동대신은 都道府縣의 知事 및 市町村의 長이 행하는 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都道府縣의 知事は 市町村의 長이 행하는 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그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그 감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생활부조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²³⁾, 금전급부의 방식으로²⁴⁾ 행함이 원칙이다. 교육부조, 주택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와 장제부조의 경우도 금전급부의 방식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 반면에 의료부조와 개호부조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보호자에게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어있다. 즉 ①불이익변경금지²⁵⁾, ②공과금지²⁶⁾, ③압류금지²⁷⁾, ④양도금지²⁸⁾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⑤피보호자는, 항상, 능력에 따라 근

23) 다만, 이것이 불가능한 때, 이에 의하여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 또는 피보호자가 희망한 때에는, 피보호자를 구호시설, 갱생시설 또는 기타 적당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또는 이들 시설에 입소를 위탁하거나, 또는 사인의 가정에 양호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법 제30조).

24) 다만, 이것이 불가능한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법 제31조).

25) 피보호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미 결정된 보호를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아니한다(법 제56조)

26) 피보호자는, 보호금품을 표준으로 해서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과되지 아니한다(법 제57조).

27) 피보호자는, 이미 급여를 받은 보호금품 또는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 당하지 아니한다(법 제58조).

로에 전념하고, 지출의 절약을 피하고, 기타 생활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생활상의 의무, ⑥수입, 지출 기타 생계의 상황에 관하여 변동이 있을 때, 또는 거주지나 세대의 구성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 실시기관 또는 복지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신고의 의무, ⑦보호의 실시기관이 피보호자를 구호시설, 갱생시설 또는 기타의 적당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또는 이들 시설에 입소를 위탁하거나, 또는 사인의 가정에 양호를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것을 결정한 때,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또는 지시를 행한 때에는, 이에 복종하여야 할 복종의 의무(제62조), 급박한 경우 등에 있어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은 때에는,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가 받은 보호금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호의 실시기관이 정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반환의 의무(제63조) 등을 진다.

28) 피보호자는,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법 제58조).

제 6 장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개선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해내는가, 그리고 수급자 선정기준은 설득력 있게 정하는가, 소득공제는 어느 정도로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유발할 것인가, 정부의 재정 사정, 복지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법·제도상의 개선 과제와 예산·행정상의 개선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법·제도상 개선과제

1.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고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민최저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우 파행적인 계측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라고 볼 수 있는 최저생계비계측은 1973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계측한 이후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을 포함하여 총 4회에 불과하고, 비계측 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은 단순히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방식은 학계로부터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정부는 1997년 7월에 생활보호법에서 『최저생계비의 결정』이라는 조항을 만들었으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그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2월 1일까지 차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다.

(1) 최저생계비 계측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최저생계비는 1973년 사회보장심의회가 계측한 것이다. 그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8년과 1994년 두 번에 걸쳐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이들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최저생계비 추정액(기준연도의 5인가구)

발표자	발표연도	기준연도(지역)	산출방식	최저생계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4	1973(전국)	엔겔방식	21,738
서상목	1979	1973(도시)	엔겔방식	23,16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8	1978(대도시)	엔겔방식	168,240
윤석범	1981	1981(전국)	라이덴방식	145,150
장현준	1986	1984(도시)	엔겔방식	327,724
이중희	1986	1985(도시)	라이덴방식	214,000
배무기 등	1987	1987(도시)	전물량방식	623,8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1988(지역별)	전물량방식	348,597
이정우 등	1990	1989(도시)	라이덴방식	432,000
박태규	1991	1989(서울)	라이덴방식	555,172
안병근	1991	1991(대구)	전물량방식	720,550
차흥봉	1994	1993(춘천)	전물량방식	746,6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994(지역별)	전물량방식	763,817

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시하였으나 본 자료는 중소도시 자료이며, 장현준은 엔겔 방식과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으나 본 자료는 엔겔 방식으로 계측한 자료임.

자료 : 김미곤(1997. 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에서 재인용

위에서 살펴본 최저생계비는 계측년도, 계측방식, 대상지역 등이 모두 다르다. 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계측방식과 대상지역은 무시할지라도 계측연도에 따른 조정은 하여야 한다. 즉 현재 시점으로 최저생계비를 환산하든지 아니면 기준시점에서의 소득 및 소비지출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상승률을 알아야 하지만 최저생계비상승률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최저생계비상승률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생활의 질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므로 적절한 변수로 볼 수 없다. 특히 두 시점간의 시차가 큰 경우는 생활의 질 변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대리변수로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²⁹⁾.

29) 김미곤, 『최저생계비계측현황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1997. 10) 정책분석논문 p.72.

(2) 개선과제

1) 최저생계비의 정기적계측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정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생산되지 못하였다. 공식적인 최저생계비가 1973, 1978, 1988, 1994년 계측되었으므로 그 계측주기가 5년, 10년, 6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측주기에 있어서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실생활이 반영되어야하므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발전정책에 있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복지정책의 기초자료이며, 수급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기준인 최저생계비는 반드시 정기적 계측되어야 한다.

2) 합리적인 계측방식의 모색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전물량방식, 반물량방식, 라이덴방식, 그리고 상대빈곤선 방식 등이 있다.

전물량방식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문가가 사치품과 고가품을 배제하고 필수품만을 마켓 바스켓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료, 교육 등 현물급여를 고려한 보충급여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반물량방식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는 식료품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식료품비를 구한 후 앵겔 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물량방식보다 전문가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데 반하여 식료품비 중 최저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여타 비목의 생계비와 그 비목의 최저생계비간의 비율이 같다고 볼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라이텐방식은 일반인들에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는 주관적인 응답과 실제소득을 변수로 사용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계측이 간단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규정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고 기대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최저생계비가 과대 평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상대빈곤선 방식은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대다수 누리는 생활형태 즉, 최저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정비율을 무엇을 근거로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의 결정에는 어느 정도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모든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시대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³⁰⁾.

3)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최저생계비 연구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까지만 계측하고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는 소홀히 취급하였다. 이러한 주된 원인으로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의 어려움, 부족한 실태조사의 표본규모, 1인당 개념으로 접근하는 생활보호사업의 낙후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가구규모라 할지라도 가구구성원의 나이, 성, 장애여부, 질병여부 등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생계비의 차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장애인, 모자, 노인가구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보호대상을 정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정기준 수당의 결정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합리적인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공식적으로 계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규모 뿐만 아니라 가구유형이 고려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한다³¹⁾.

30) 김미곤, 앞의논문 p.77.

31) 김미곤, 앞의논문 p.79.

2.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이 예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 있는바, 특히 그 기준이 강화된 재산기준, 토지소유기준, 주거면적기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재산기준

가장 큰 문제는 재산기준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되었고 새롭게 마련된 재산기준의 수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예산상의 이유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도 전혀 없으며, 부양의무자도 없는 노부부가 중증 장애인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가구는 시가 3,500만원 짜리 반 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가구는 재산기준 즉3~4인 가구 3,200만원(실거래가)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농촌지역의 경우 토지 1,000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 평당 35,000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 때도 그 가구의 생활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3,5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런 경우는 우선 땅을 팔아서 먹고살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야 수급자로 선정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은 없으나 재산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선 생계비를 지급한 뒤에 건물 혹은 토지가 처분되면 사후에 돌려 받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주거면적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집의 경우는 전용면적 15평을 넘어서는 안되고, 임차가구의 경우는 전용면적 20평을 넘어서는 안 된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는 15~20평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가로 환산하면 2,000만원도 채 안 되는 주택이 많다. 그리고 그 가구에 소득이 전혀 없고 노동능력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주거면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논란

끝에 예외적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주거면적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재산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같이 먼저 생계비를 지원한 뒤에 사후에 돌려 받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소득기준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최저생계비는 같은 가구원수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비싼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더 높다. 소득기준을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하더라도 인구수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대도시 지역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많은 가구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3. 소득공제제도의 유보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를 2002년으로 연기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5%,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 학생이 얻은 소득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해줌으로써 근로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외 근로소득과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도·소매 등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10%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2002년부터 공제하도록 하여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를 유보하고 있다.

한편 소득공제제도는 근로동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공제율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지는 만큼 제도의 시행에 앞서 철저한 소득 파악과 준비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근로의욕과 정부의 소득지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1인가구 기준으로 기초보장 수급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월

32만원으로서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정소득의 부과기준으로 인정하는 최저임금(1일 12,800원 시간당 1,600원×8시간)으로 하여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0시간이 된다.

여기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제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즉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2만원의 기초보장 수급액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월 200시간 이상의 근로를 통해 32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든지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만원 보다 8만원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월 250시간의 노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00시간의 근로와 250시간의 근로와의 차이가 불과 8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소득공제율에따른기초보장수급권이상실되는근로시간과월급여

비 고		0%	10%	15%	20%
1인가구	근로시간	2 0 0 시 간	2 2 2 시 간	235시간	250시간
	월급수준	320,000원	355,500원	376,400원	400,000원
4인가구 (맞벌이)	근로시간	290시간	323시간	342시간	363시간
	월급수준	930,000원	1,033,300원	1,094,100원	1,162,500원

주 : 시간당 최저임금 1600원, 일일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한 수치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공제율이 20%정도 높아져도 소득은 8만원 밖에 늘지 않으므로 기초수급대상자는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려는 근로동기를 유발하기는 힘들다고 보아지므로 소득공제가 근로유인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이상의 공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32) 최숙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연구』(삼성경제연구소, 2000. 11) p.18. 최숙희 박사님의 논문과 이 글에서 수치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차이와 자활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근로로 보느냐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 것임.

다³³⁾. 다만 소득공제율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지원액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수급대상자 가구의 근로시간도 증가하고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기초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소득지원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물지원은 소득수준을 낮추어 소득지원을 받으려는 동기 부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술이나 도박 등 유흥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민등록 무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서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에서 개별가구나 합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로서 그 배우자·미혼자녀 중 30세미만인 자·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 경우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2000년 1월 현재 주민등록 무적자는 6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⁴⁾. 이들 주민등록 무적자는 대개 쪽방 거주자나 노숙자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물론 의료보험, 공공근로 등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근로는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요긴한 수단이지만, 수당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데 통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무적자들은 그나마도 막막한 것이다. 일례로 구세군이 운영하는 서울 충정로 사랑방은 구청과 협의해 구세군 명의의 통장으로 공공근로 수당을 받아 일을 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하지만 상당수 구청은 본인 통장이

33) 소득공제율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에서는 일반근로능력자는 20%, 장애인·노인·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50%, 학생의 경우는 30%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음.

34) 중앙일보, 2001년 1월 29일자.

없으면 아예 공공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이들을 적극 구제하고 시행령이나 규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현행 제도로는 주민등록 말소자, 주거지로 인정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취지와 달리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외돼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 2 절 예산·행정상 개선과제

1. 정부 재정상 문제

일반회계와 복지예산 추이

(단위 : 십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활보호(A)	360.6	435.7	574.9	1,135.3	1,727.8	2,737.7
복지예산(B)	2,370.7	2,851.2	3,112.7	4,161.1	6,199.7	8,134.8
일반회계(C)	58,822.8	67,578.6	75,582.9	83,685.2	86,736.4	94,900.0
A/C	0.6	0.6	0.8	1.4	2.0	2.9
B/C	4.0	4.2	4.1	4.9	7.1	8.6
A/B	15.21	15.28	18.47	27.28	27.87	33.65

주 :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9』, 『보건복지통계연보 1999』, 『2001년 예산안』

정부재정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까지 4%대에 머물렀으나, 1999년에 4.9%, 2000년에 7.1%, 2001년에는 8.6%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생활보호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까지 1%미만에 불과 하였으나, 1999년에 1.4%, 2000년에 2.0%, 2001년에 2.9%로 수직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예산 중 생활보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까지 20%대 미만으로서 완만한 상승세였으나, 1999년에 27.28%, 2000년에 27.87%, 2001년에 33.65%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볼 때 복지예산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복지예산 중 생활보호 예산도 재산조사나 수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인프라가 완비되지 않는다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면 수급이 가는 면이 있다 하겠으나, 생활보호 예산이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점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 집행에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염려도 있으며, 사회일각에서는 성급한 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을 감안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파악과 대상자 선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생산적 복지시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인 전문인력, 전산화, 자활사업의 시행기반 등 행정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공정한 수급자 선정 및 복지대상자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현재 4,800명 수준에서 7,2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OECD 국가의 사회복지공무원은 1인 평균 100가구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평균 250가구를 담당함으로써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큰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보면, 각각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또한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의 확보는 아주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연을 보면, 경기도 만안구 안양2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인 박모씨는(당시 36세) 지난해 10월 위암으로 숨졌다, 그는 혼자서 500가구를 맡아 기초생활보장제 실무작업에 매달려 대상자 조사와 그 선정작업까지 마쳤으나 과로로 결국 명을 달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트레스와 위암의 인과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순직 처리도 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의 한 복지사는 낮엔 민원처리를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귀가하는 밤에 방문하느라 오후 10~11시에 퇴근한다고 한다.

경북의 어느 한 복지사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과로로 유산한 복지사도 있으며, 폭주하는 민원으로 가정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경기도의 한 여성 복지사는 이혼을 당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복지사 5명이 유산하고 3명이 입원하는 등 전국에서 170여명이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³⁵⁾.

또한 읍·면·동의 PC보급 및 LAN구축,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의 완료, 소득·재산관련 전산망의 연계 등 복지업무관련 정보화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는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등 보장기관은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자립이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한 예로 서울 관악자활센터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난곡·봉천동 주민들의 특성을 감안해 건물 보수를 전담하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었으나 건설관련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는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여 자활공동체의 우선 발주를 막고 있다. 센터측은 이에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했으나 자활공동체로 인정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지만 저기술·저학력인 수급권자가 그만큼 들어갈 경우 많은

35) 중앙일보, 2001년 1월 22일자.

기술인력이 필요한 종합건설업으로의 변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센터 측은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자활공동체 지정기관에서 탈퇴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법과 현실은 많은 괴리가 있는 바, 관련 부청와 협의 하여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³⁶⁾.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70곳으로 자활지원사업 전담조직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380여 개 직종의 1개월~1년 짜리 기존 직업훈련 외에 자활대상자를 위해 3개월 미만인 32개 직종의 훈련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 코스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단기 프로그램으로는 자활 효과가 무리이며, 도배와 세탁 등 일용직 단순노동이나 용접과 염색 등의 3D업종이 다수로 자활지원의 근본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자의 대부분이 일용·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의 근로소득 파악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기관간 연계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자활·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수급자에게 결연·후원 등을 연결하여 줄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자원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3. 생활보호기금 운용

보건복지부는 구법인 생활보호법 제29조에서 생활보호실시 비용(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충당 할 수 있도록 보호기금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생업자금 대여 이자수입, 기금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보호기금의 운용 현황은 거의 매년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명목상으로만 기금이 존재하고 있다.

36) 중앙일보, 2001년 4월 11일자, 난곡현장리포트3.

생활보호기금 운용 현황

2000년 6월말 현재

(단위:천원)

시·도	전년말기금보유액	이자수입	총액	집행액	잔액
계	1,895,838	615,310	2,511,148	3,314	2,507,834
서울	115,669	10,818	126,487	3,314	123,173
대구	192,134	407,253	599,387		599,387
광주	86,864	0	86,864		86,864
대전	116,100	2,647	118,747		118,747
울산	114,914	6,071	120,985		120,985
경기	0	0	0	0	0
충북	87,281	30,391	117,672		117,672
충남	195,803	17,622	213,425		213,425
전북	199,276	15,169	214,445		214,445
전남	258,070	96,652	354,722		354,722
경북	522,358	27,907	550,265		550,265
제주	7,369	780	8,149		8,149

자료: 200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집

위 표에서 보면 2000년 6월말 현재 각 시도 생활보호기금 총액은 25억 1,100만원이며, 그 집행 실적은 330만원으로서 집행 비율은 0.13%이다.

그나마 서울 한 곳의 집행실적이 330만원이며, 나머지 시·도는 집행액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집행실적을 보면 생활보호기금은 유명무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매년 비슷한 형태로 과연 생활보호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구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용도를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받는 채무 보증 비용, 생업자금 채무 보증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다양화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보장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작년도 추경예산에 기금의 재원으로 500억을 요구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기 다른 조례를 정하게 되면 기금의 관리·운용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제정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기타 개선과제

제도상의 개선과제 및 예산·행정상의 개선과제 외에 주요한 것을 들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 생계비 강제 환수 문제, 무제한적인 수급기간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1.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생계곤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한 자 등

그런데 이 법 및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수급자와 생활여건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계층이다.

소득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최저생계비가 93만원이므로 차상위 계층의 소득은 그 120% 미만이면 111만 6천원 미만이다. 실제 93만원과 100만원 안밖으로 생활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상의 요건 또한 실제 수급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직업 또한 일용직·임시직·단순노무직·파출부 등으로서 수급권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즉 정부의 어떤 보호나 혜택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조사도 법령상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른 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2. 생계비 강제환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는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 각각에게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양능력 있는 자식이란 부모와 자식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4월 생계비를 강제환수 하기 시작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는 그 동안 생계비를 지급한 가구 가운데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는 19명을 찾아내 국가가 대신 지급한 생계비의 납부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생계비 지급 가구 중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들을 찾아내라고 자치단체에 지시했으며 3월말 현재 1차로 200여명의 부양능력 보유 자식들을 찾아냈다고 밝히고 아직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보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당 비용 환수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³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0조(급여의 중지)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37) 중앙일보, 2001년 4월 6일자.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치 않을 때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생계비를 강제환수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수급권자를 선정할 당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존부를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고, 둘째 나중에라도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밝혀진 때는 동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하여 계속 그 비용을 강제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는 우선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동법 제30조 급여의 중지 조항에는 그런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와 제30조(급여의 중지)는 서로 배치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밝혀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중지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아니면 생계비용의 강제환수가 악순환 되어야 하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현장의 실상을 보면, 서울 신림7동 저소득 밀집지역에 25년째 살고 있는 구의원은 『현행법은 부양 자식이 있으면 대부분 수급혜택을 박탈하는 전통적 효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이는 빈곤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혼자 사는 노인의 대부분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경우여서 이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⁸⁾.

그리고 한편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정부가 효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된다면 그 부모와 자식은, 자식들간의 불화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따라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비용을 강제 징수 하게 되는 경우는 강제징수 대신 그 액수의 다소에 따라 일정기간 사회 봉사 활동을 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부양능력 있는 자식은 부모와 자식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자식의 소득과약시 의료비와 학비 등 가구별 지출요인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자에서 제외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지출요인을 감안하여 부양능력

38) 중앙일보, 2001년 4월 12일.

유무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3. 수급기간의 무제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1994년)의 경우 소득지원제도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크지 않았다.

AFDC의 노동효과 실증분석 결과 소득지원 가구의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AFDC만을 소득원으로 가지는 가구가 전체 소득지원 가구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FDC에 의한 소득지원을 받는 가구는 AFDC프로그램의 특성을 이용하여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 조정법’(PRWRA : Personal Responsibility &

Work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한 ‘빈곤가구 한시 부조 프로그램’(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으로 기존의 AFDC 프로그램을 대체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부양비 수급을 일생에 걸쳐 합계 60개월로 한정하고 TANF 프로그램의 수급기간은 일생에 통산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미국의 경우는 복지수급자가 감소하고 복지수급가구의 월 소득도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도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고 수급자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수급기간에 대한 제한조치를 두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경우 자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령·노약자에 대한 보완 대책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개선과제

제 7 장 결 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3대 국정철학인 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기왕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99년 9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시행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은 제정 당시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더 나은 사회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앞에서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결론 삼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비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생활의 보장이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 개인주의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약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지책임은 결국 복지재정지출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자산조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정책결정기관(보건복지부)과 집행기관(행정자치부)의 분리로 전반적인 제도 운영과 관리에 통합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대상자책정, 급여지급, 보고업무, 대상자관리,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상담 및 자원개발 등 전문적인 대인서비스와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나 업무과중과 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등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조직개선 및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기초생계보장 수급액이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됨에 따라 근로의욕 저하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4인 가족 기준 월

9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수급액의 과다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리고 근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장애인, 자활공동체 구성원 및 학생의 소득에 대해 10~15%를 실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으로서 최소한 20%정도로 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근로의욕 고취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 경우 공제수준이 높아지면 정부의 재정지출도 늘어나게 되므로 복지예산과 정부 재정 양면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시행 1년이 되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소득, 자활공동체 구성원의 소득, 학생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관련 부처에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인구·사회적 여건의 변화로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 가족해체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에 따라 노인부양, 자녀양육 등의 기존 여성 역할의 대체가 요구되는 등 노인·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수요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단위의 복지서비스, 알콜 및 약물중독, 비행,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모두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증대될 것인 바, 조금씩 서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전 철저한 준비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부 록

생활보호법(일본)

改正 平成12年 6月 7日 法律111號

제 1 장 총 칙

제 1 조(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 제 25조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함께, 그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무차별평등) 모든 국민은, 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이하 '보호'라고 함)를, 무차별하고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

제 3 조(최저생활) 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최저한도의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4 조(보호의 보충성) ①보호는, 생활이 곤궁한 자가, 그의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능력 기타 모든 것을, 그의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②민법(明治29年 法律 第89號)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扶助는, 모두 이 법률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보호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이 법률의 해석 및 운용) 전 4조에서 규정하는 바는, 이 법률의 기본원리로서, 이 법률의 해석 및 운용은, 모두 이 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6 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률에 있어서 '피보호자'라 함은, 현실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률에 있어서 '요보호자'라 함은, 현실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률에 있어서 '보호금품'이라 함은, 보호의 명목으로 급여하거나 또는 대여되는 금전 및 물품을 말한다.

④이 법률에 있어서 '금전급부'라 함은, 금전의 급여 또는 대여에 의하여, 보호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이 법률에 있어서 '현물급부'라 함은, 물품의 급여 또는 대여, 의료의 급부, 역무의 제공 기타 금전급부 이외의 방법으로 보호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호의 원칙

제7조(신청보호의 원칙) 보호는, 요보호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의 동거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요보호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 때에는, 보호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8조(기준 및 정도의 원칙) ①보호는, 후생노동대신(보건복지부장관, 역자 주)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측정된 요보호자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그 가운데에서, 그 자의 금전 또는 물품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행한다.

②전항의 기준은, 요보호자의 연령별, 성별, 세대구성별, 소재지역별 기타 보호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요를 충족함에 충분한 것으로, 이것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필요즉응의 원칙) 보호는, 요보호자의 연령별, 성별, 건강상태 등 그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의 필요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세대단위의 원칙) 보호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그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것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호의 종류 및 범위

제11조(종류) ①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부조

2. 교육부조
3. 주택부조
4. 의료부조
5. 介護부조
6. 출산부조
7. 생업부조
8. 장제부조

②전항 각 호의 부조는, 요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단급 또는 병급으로 행하여진다.

제12조(생활부조) 생활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다.

1. 衣食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移送

제13조(교육부조) 교육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다.

1. 의무교육에 수반하여 필요한 교과서 기타 학용품
2. 의무교육에 수반하여 필요한 통학용품
3. 학교급식 기타 의무교육에 수반하여 필요한 것

제14조(주택부조) 주택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다.

1. 주거
2. 보수 기타 주택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

제15조(의료부조) 의료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
3. 의학적 처치, 수술 및 기타의 치료와 시술
4.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상의 관리 및 그 요양에 따른 시중 기타의 간호
5. 병원 또는 진료소에의 입원 및 그 요양에 따른 시중 기타의 간호

6. 移送

제15조의2(개호부조) ①개호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개호자(개호보험법(平成9年<1997>法律第123號)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개호자를 말함. 제3항에 있어서도 같음) 및 요지원자(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지원자를 말함. 제3항에 있어서도 같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다.

1. 주거개호(주거개호지원계획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함)

2. 복지용구

3. 주택개수

4. 시설개호

5. 移送

②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개호라 함은, 개호보험법 제7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방문개호, 동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방문입욕개호, 동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방문간호, 동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방문재활, 동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요양관리지도, 동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通所개호, 동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통소재활, 동조 제13항에서 규정하는 단기입소생활개호, 동조 제14항에서 규정하는 단기입소요양개호, 동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동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시설입소자 생활개호 및 동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복지용구대여, 그리고 이들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개호지원계획이라고 함은, 주거에 있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가 주거개호 기타 주거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이하 이 항에 있어서 '주거개호 등'이라 함)의 적절한 이용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해 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가 이용하는 주거개호 등의 종류, 내용 등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④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설개호라 함은, 개호보험법 제7조제2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복지시설 서비스, 동조 제22항에서 규정하는 개호보건시설 서비스 및 동조 제23항에서 규정하는 개호요양시설 서비스를 말한다.

제16조(출산부조) 출산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다.

1. 분만의 보조
2. 분만전 및 분만후의 처치
3. 탈지면, 가제 기타 위생재료

제17조(생업부조) 생업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다. 다만, 이에 의하여, 그 자의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립을 조장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료
2. 생업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
3.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

제18조(葬祭부조) ①장제부조는, 곤궁으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다.

1. 검안
2. 사체의 운반
3. 화장 또는 매장
4. 납골 기타 장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

②아래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전항 각 호의 장제부조를 행할 수 있다.

1. 피보호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의 장제를 행할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
2. 사자에 대하여 그 장제를 행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가 유류한 금품으로 장제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할 수 없는 때

제 4 장 보호의 기관 및 실시

제19조(실시기관) ①都道府縣의 知事(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자 주), 市長 및 사회복지법(昭和26年<1951>法律第45號)에서 규정하는 복지에 관한 사무소(이하 '복지사무소'라 함)를 관리하는 町村의 長(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장; 역자 주)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결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1. 그의 관리에 속하는 복지사무소의 소관구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는 요보호자

2. 거주지가 없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요보호자로서, 그의 관리에 속하는 복지사무소의 소관구역 내에 현재지를 가지는 자

②거주지가 명확한 요보호자인 경우에도, 그 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 때에는, 그 급박한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는, 그 자에 대한 보호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의 현재지를 소관하는 복지사무소를 관리하는 都道府縣의 知事 또는 市町村의 長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3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피보호자를 구호시설, 갱생시설 또는 기타의 적당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또는 이들 시설에 입소를 위탁하거나, 또는 사인의 가정에 양호를 위탁한 경우 또는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개호부조(시설개호에 한함)를 개호노인복지시설(개호보험법 제7조제2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노인복지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에 위탁해서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입소 또는 위탁이 계속되는 동안, 그 자에 대하여 보호를 행할 의무를 지는 자는, 그 자의 입소 또는 위탁전의 거소지 또는 현재지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전 3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행할 의무를 지는 자(이하 ‘보호의 실시기관’이라고 함)는,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의 관할에 속하는 행정청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⑤보호의 실시기관은,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령(내각이 정립하는 행정입법; 역자 주)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호의 실시기관에 위탁하여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⑥복지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町村의 長(이하 ‘町村長’이라고 함)은, 그 町村의 구역 내에 있어서 특히 급박한 사유에 의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요보호자에 대하여, 응급적 조치로서 필요한 보호를 행한다.

⑦町村長은, 보호의 실시기관 또는 복지사무소의 장(이하 ‘복지사무소장’이라고 함)이 행하는 보호사무의 집행을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을 행한다.

1. 요보호자를 발견하거나 또는 피보호자의 생계 기타의 상황의 변동을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보호의 실시기관 또는 복지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2.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의 개시 또는 변경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이를 보호의 실시기관에게 송부하는 것
3. 보호의 실시기관 또는 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피보호자 등에 대하여 보호금품을 교부하는 것
4. 보호의 실시기관 또는 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요보호자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

제20조(직권의 위임) 都道府縣의知事は, 이 법률이 정하는 그의 직권의 일부를 그의 관할에 속하는 행정청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기관)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주사는,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都道府縣의 知事 또는 市町村의 長의 사무의 집행을 보조한다.

제22조(민생위원의 협력) 민생위원법 (昭和23年<1948> 法律 第198號) 에서 정하는 민생위원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市町村의 長, 복지사무소장 또는 사회복지주사의 사무의 집행에 협력한다.

제23조(사무감독) ①후생노동대신은 都道府縣의 知事 및 市町村의 長이 행하는 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都道府縣의 知事は 市町村의 長이 행하는 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그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그 감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은 都道府縣의 知事 또는 市町村의 長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구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시를 행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해야 하는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정령에서 정한다.

제24조(신청에 의한 보호의 개시 및 변경) ①보호의 실시기관은, 보호의 개시신청이 있을 때에는, 보호의 요부, 종류, 정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에는, 결정의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 1항의 통지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3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동항의 서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보호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1항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신청자는, 보호의 실시기관이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전 4항의 규정은,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보호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보호의 개시 또는 변경의 신청은, 町村長을 경유하여 할 수도 있다. 町村長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 안에 그 신청서에, 요보호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유무, 자산상황 기타 보호에 관련된 결정을 행함에 관하여 참고로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보호의 실시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개시 및 변경) ①보호의 실시기관은, 요보호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써 보호의 종류, 정도 및 방법을 결정하고, 보호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보호의 실시기관은, 항상 피보호자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고, 보호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써 그 결정을 행하고, 서면으로 이를 피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③町村長은, 요보호자가 특히 급박한 사유에 의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써 제19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보호를 행하여야 한다.

제26조(보호의 정지 및 폐지) 보호의 실시기관은, 피보호자가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 정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이를 피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 또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의 정지 또는 폐지를 행할 때에도 그러하다.

제27조(지도 및 지시) ①보호의 실시기관은, 피보호자에 대하여, 생활의 유지, 향상 기타 보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도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도 또는 지시는, 피보호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은, 피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도 또는 지시를 강제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상담 및 조언) 보호의 실시기관은, 요보호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보호자의 자립을 조장하기 위하여, 요보호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여,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8조(조사 및 검진) ①보호의 실시기관은, 보호의 결정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보호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기타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보호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거주지 장소에 출입하여, 이들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또는 당해 요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후생성령(보건복지부령; 역자 주)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④보호의 실시기관은, 요보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아니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검진을 수검하도록 하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의 개시 또는 변경의 신청을 각하 하거나, 또는 보호의 변경, 정지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촉탁 및 보고의 청구) 보호의 실시기관 및 복지사무소장은, 보호의 결정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보호자 또는 그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및 수입의 상황에 관하여, 관공서에 조사를 촉탁하거나 또는 은행, 신탁회사, 요보호자 또는 그의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平成 5年<1993> 法律 第88號) 제3장(제12조 및 제14조를 제외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호의 방법

제30조(생활부조의 방법) ①생활부조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한 때, 이에 의하여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 또는 피보호자가 희망한 때에는, 피보호자를 구호시설, 갱생시설 또는 기타 적당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이들 시설에 입소를 위탁하거나, 또는 사인의 가정에 양호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단서규정은, 피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소 또는 양호를 강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호의 실시기관은, 피보호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어도,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제 1항 단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항의 허가는, 가사심판법 (昭和22年<1947> 法律 第152號)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제1항 갑류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본다.

제31조 ①생활부조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한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생활부조를 위한 보호금품은, 1월분 이내를 한도로 하여 선급한다. 다만, 이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1월분을 넘어서 선급할 수 있다.

③주거에 있어서 생활부조를 행하는 경우의 보호금품은, 세대단위로 계산하고, 세대주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한다. 다만, 이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피보호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보험법 제7조제22항에서 규정하는 개호노인보건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개호요양형 의료시설(동조 제23항에서 규정하는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로서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시설(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개호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에서 시설개호를 받는 피보호자에 대하여 생활부조를 행하는 경우의 보호금품을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당해 개호노인보건시설이나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전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생활부조를 행하는 경우의 보호금품은, 피보호자 또는 시설의 장, 또는 양호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부한다.

제32조(교육부조의 방법) ①교육부조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교육부조를 위한 보호금품은, 피보호자, 그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또는 피보호자가 통학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교부한다.

제33조(주택부조의 방법) ①주택부조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주택부조 가운데, 주거의 현물급부는, 숙소제공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숙소제공시설에 이를 위탁하여 행한다.

③제3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주택부조를 위한 보호금품은, 세대주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한다.

제34조(의료부조의 방법) ①의료부조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현물급부 가운데, 의료의 급부는, 의료보호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보호시설이나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이를 위탁하여 행한다.

③전항에서 규정하는 의료의 급부 가운데, 안마 맛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 시술사 등에 관한 법률 (昭和22年<1947>法律第217號) 또는 柔道 整復師法 (접골사에 관한 법률; 역자 주; 昭和45年<1970>法律第19號) 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 맞사지 지압사 또는 접골사(이하 ‘시술자’라고 함)가 행할 수 있는 범위의 시술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시술자에게 위탁하여 그 급부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는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의 급부를 받거나,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술자로부터 시술의 급부를 받을 수 있다.

⑤의료부조를 위한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 대하여 교부한다.

제34조의 2(개호부조의 방법) ①개호부조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현물급부 가운데, 주거개호 및 시설개호는, 개호기관(그 사업으로서 주거개호를 행하는 자 및 그 사업으로서 주거개호지원계획을 작성한 자와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및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개호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에게 이를 위탁하여 행한다.

③전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개호부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4항 중 ‘급박한 사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급박한 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한다.

제35조(출산부조의 방법) ①출산부조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현물급부 가운데, 助産의 급부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조산부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③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출산부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조(생업부조의 방법) ①생업부조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현물급부 가운데,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사용 및 생업에 필요한 기능의 취득은, 직업훈련시설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이들 시설에 이를 위탁하여 행한다.

③생업부조를 위한 보호금품은, 피보호자에 대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 또는 기능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금품은, 직업훈련시설의 장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37조(장제부조의 방법) ①장제부조는, 금전급부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때,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물급부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장제부조를 위한 보호금품은, 장제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한다.

제 6 장 보호시설

제38조(종류) ①보호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구호시설
2. 갱생시설
3. 의료보호시설
4. 직업훈련시설
5. 숙소제공시설

②구호시설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요보호자를 입소시켜, 생활부조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부 록

③갱생시설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양호 및 생활지도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를 입소시켜, 생활부조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④의료보호시설은, 의료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급부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⑤직업훈련시설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유, 또는 세대의 사정에 의하여 취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요보호자에 대하여, 근로 또는 기능의 습득에 필요한 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여, 그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⑥숙소제공시설은, 주거가 없는 요보호자의 세대에 대하여, 주택부조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제39조(보호시설의 기준) 보호시설은, 그 시설의 설비 및 운영과, 그 시설에 있어서의 피보호자의 수 및, 이(피보호자의 수)와 그 시설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총수와의 비율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都道府縣 및 市町村의 보호시설) ①都道府縣은,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市町村은,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후생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都道府縣의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호시설을 설치한 都道府縣 및 市町村은, 입소 중에 있는 피보호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하고 휴지할 수 있다.

④都道府縣 및 市町村이 행하는 보호시설의 설치 및 폐지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1조(사회복지법인 및 일본적십자사의 보호시설의 설치) ①都道府縣 및 市町村 이외에, 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일본적십자사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②사회복지법인 또는 일본적십자사는,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都道府縣의 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명칭 및 종류

2. 설치자인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자산상황
3. 기부행위, 정관 기타 기본약관
4.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
5. 수용정원
6. 사업개시의 예정년월일
7. 경영책임자 및 보호의 실무에 임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8. 경리의 방침

③都道府縣의 지사는, 전항의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이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외에, 아래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제적 기초가 확실할 것
2. 그 보호시설이 주로 이용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요보호자의 분포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당해 보호시설의 신설이 필요할 것
3. 보호의 실무에 임하는 간부직원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일 것

④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都道府縣의 지사는, 그 보호시설의 존속기간을 한정하거나 또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2항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일본적십자사는, 동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열거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都道府縣의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사회복지법인 및 일본적십자사의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사회복지법인 및 일본적십자사는, 보호시설을 휴지하거나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이유, 입소중인 피보호자에 대한 조치 및 재산의 처분방법을 명확히 하고, 또한, 제70조,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교부금 또는 보조금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고, 휴지 또는 폐지의 시기에 관하여 都道府縣의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지도) ①都道府縣의 지사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 또는 일본적십자사가 설치한 보호시설에 대한 전항의 지도에 관하여는 市町村의 장이 이를 보조한다.

제44조(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①都道府縣 지사는, 보호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상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출입하여, 그 관리자로부터 그의 설비 및 회계서류, 진료기록 기타의 장부서류의 열람 및 설명을 구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조(개선명령 등) ①후생노동대신은 都道府縣에 대하여, 都道府縣의 지사는 市町村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그 사업의 정지 또는 그 보호시설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그 보호시설이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그 보호시설이 존립목적상 상실하기에 이른 때
3. 그 보호시설이 이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명령, 또는 이들에 기초하여 행하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都道府縣의 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일본적십자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제41조제2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그 보호시설이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그 보호시설이 제41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그 보호시설의 경영에 있어서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41조제2항제6호의 예정년월일(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예정년월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련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통지는, 청문기일 또는 변명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기한(구두에 의한 변명기회의 부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의 14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都道府縣의 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에 관련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통지를 행한 때에는, 청문의 기일 및 장소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에 관련되는 청문의 기일에 행하여지는 심리는 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규정) ①보호시설의 설치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방침
2. 직원의 정수, 구분 및 직무내용
3.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우방법
4.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
5. 입소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작업의 종류, 방법, 시간 및 수익의 처분방법
6.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②都道府縣 이외의 자는, 전항의 관리규정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都道府縣의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관리규정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③都道府縣의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관리규정의 내용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보호시설의 의무) ①보호시설은, 보호의 실시기관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위탁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호시설은, 요보호자의 입소 또는 처우에 당하여,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차별적인 또는 우월적인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호시설은, 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호시설은, 관계 공무원이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는 출입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호시설의 장) ①보호시설의 장은, 항상,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생활의 향상 및 갱생을 도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都道府縣의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지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④보호시설의 장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피보호자에 관하여, 보호의 변경, 정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 실시기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의료기관, 개호기관 및 조산기관

제49조(의료기관의 지정) 후생노동대신은, 국가가 개설한 병원이나 진료소 또는 약국에 관하여 그 주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都道府縣의 지사는 기타의 병원, 진료소 (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함)나 약국, 또는 의사나 치과 의사에 관하여 개설자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 법률에 의한 의료부조를 위한 의료를 담당시킬 기관을 지정한다.

제50조(지정의료기관의 의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고 함)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피보호자의 의료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지정의료기관은, 피보호자의 의료에 관하여, 都道府縣의 지사가 행하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의2(변경의 신고 등) 지정의료기관은, 당해 지정의료기관의 명칭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지정의료기관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거나, 또는 재개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49조의 지정을 한 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縣의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지정의 사퇴 및 취소) ①지정의료기관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설

정하여, 그 지정을 사퇴할 수 있다.

②지정의료기관이,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후생노동대신이, 都道府縣의 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都道府縣의 지사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진료방침 및 진료보수) ①지정의료기관의 진료방침 및 진료보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방침 및 진료보수의 예에 의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진료방침 및 진료보수에 의할 수 없는 때 및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의 진료방침 및 진료보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의료비의 심사 및 지불) ①都道府縣의 지사는,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내용 및 진료보수의 청구를 수시로 심사하고, 지정의료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진료보수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지정의료기관은, 都道府縣의 지사가 행하는 전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都道府縣의 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진료보수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昭和23年<1948>法律第129號)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 또는 의료에 관한 심사기관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都道府縣, 市 및 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町村은,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보수의 지불에 관한 사무를,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보수의 금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昭和37年<1962>法律第160號; 우리의 행정심판법에 유사; 역자주)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4조(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①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縣의 지사는, 진료내용 및 진료보수청구의 적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의료기관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실지에서, 그 설비 또는 진료기록 기타의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4조의2(개호기관의 지정 등) ①후생노동대신은, 국가가 개설한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또는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 관하여, 주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都道府縣의 지사는, 기타의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또는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또는 그 사업으로서 주거개호를 행하는 자나 그 사업으로서 주거개호지원계획을 작성하는 자에 대하여 개설자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 법률에 의한 개호부조를 위한 주거개호나 주거개호지원계획의 작성 또는 시설개호를 담당하게 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②노인복지법(昭和38年<1963> 法律 第133號) 제20조의5에서 규정하는 특별양호노인홈에 관하여 개호보험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그 개호노인복지시설은, 그 지정 시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개호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되는 동항의 지정은, 당해 개호노인복지시설에 관하여, 개호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지정사퇴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50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개호기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개호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51조제1항중 ‘지정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정개호기관(개호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함)’으로, 제53조제3항중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昭和23年<1948>法律第129號)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 또는 의료에 관한 심사기관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개호보험법에서 정하는 개호급부비심사위원회’으로, 동조 제4항 중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로 변경하는 외에, 이들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변경은, 정령에서 정한다.

제55조(조산기관 등에의 준용)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률에 의한 출산부조를 위한 조산을 담당하는 조산부와 이 법률에 의한 의료부조를 위한 시술을 담당하는 안마 맛사지 지압사 및 접골사에 관하여, 제

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의료보호시설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5조의2(告示) 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縣의 지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전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본 조에 있어서도 같음) 및 제54조의2제1항의 지정을 한 때
2. 제50조의2(제54조의2제4항 및 전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3. 제51조제1항(제54조의2제4항 및 전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제49조의 지정의 사퇴가 있을 때
4. 제51조제2항(제54조의2제4항 및 전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하여 제49조의 지정을 취소한 때

제 8 장 피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제56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보호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미 결정된 보호를 불이익하게 변경당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공과금지) 피보호자는, 보호금품을 표준으로 해서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과당하지 아니한다.

제58조(압류금지) 피보호자는, 이미 급여를 받은 보호금품 또는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 당하지 아니한다.

제59조(양도금지) 피보호자는,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0조(생활상의 의무) 피보호자는, 항상, 능력에 따라 근로에 전념하고, 지출의 절약을 피하고, 기타 생활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의 의무) 피보호자는, 수입, 지출 기타 생계의 상황에 관하여 변동이 있을 때, 또는 거주지나 세대의 구성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 실시기관 또는 복지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지시 등에 복종할 의무) ①피보호자는, 보호의 실시기관이, 제3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피보호자를 구호시설, 갱생시설 또는 기타의 적당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이들 시설에 입소를 위탁하거나, 또는 사인의 가정에 양호를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것을 결정한 때,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또는 지시를 행한 때에는,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피보호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그 보호시설의 관리규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보호의 실시기관은, 피보호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보호의 변경, 정지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

④보호의 실시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변경, 정지 또는 폐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호자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당해 처분을 행하려고 하는 이유, 변명을 해야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 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장(제12조 및 제14조를 제외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비용반환의 의무) 피보호자가, 급박한 경우 등에 있어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은 때에는,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가 받은 보호금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호의 실시기관이 정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장 不服申請

제64조(심사청)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町村의 장이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의 관할에 속하는 행정청에게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무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는, 都道府縣의 지사에 대하여 행한다.

제65조(재결을 해야하는 기간) ①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縣의 지사는,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50일 이내에 당해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인은, 전항의 기간 안에 재결이 없는 때에는, 후생노동대신 또는 都道府縣의 지사가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6조(재심사청구) ①市町村의 장이 행한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처분 또는 市町村의 장의 관할에 속하는 행정청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위임에 기초하여 행한 처분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관하여 都道府縣의 지사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조 제1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의 재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항 중 '5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70일'로 변경한다.

제67조 및 제68조 삭제

제69조(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보호의 실시 기관이 행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제10장 비 용

제70조(市町村의 지불) 市町村은,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 그 장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행하는 보호를 포함함)에 관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비용
 - 가. 보호의 실시에 요하는 비용(이하 '보호비'라고 함)
 - 나. 제30조제1항 단서규정, 제33조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자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또는 입소를 위탁하거나, 아니면 보호시설을 이용시키거나 또는 보호시설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에 수반하여 필요한 보호시설의 사무비(이하 '보호시설사무비'라고 함)
 - 다. 제30조제1항 단서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자를 적당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또는 그 입소를 적당한 시설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사인의 가정에 양호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에 수반하여 필요한 사무비(이하 '위탁사무비'라고 함)
2. 그 장의 관리에 속하는 복지사무소의 소관구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都道府縣의 지사 또는 다른 市町村의 장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행하는 보호를 포함함)에 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

탁사무비

3. 그 장의 관리에 속하는 복지사무소의 소관구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른 市町村의 장이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에 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
4. 그 설치하는 보호시설의 설비에 요하는 비용(이하 '설비비'라고 함)
5.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6.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비(이하 '행정사무비'라고 함)

제71조(都道府縣의 지불) 都道府縣은, 아래에 열거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 그의 장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행하는 보호를 포함함)에 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
2. 그의 장의 관리에 속하는 복지사무소의 소관구역내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都道府縣의 지사 또는 다른 市町村의 장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행하는 보호를 포함함)에 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
3. 그 장의 관리에 속하는 복지사무소의 소관구역내에 현재지를 가지는 자(그 소관구역 외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를 제외함)에 대하여, 市町村의 장이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에 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
4. 그가 설치하는 보호시설의 설비비
5.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6.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행정사무비

제72조(대위지불) ①都道府縣, 市 및 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町村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의 관리에 속하는 복지사무소의 소관구역 내의 보호시설, 지정의료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시설에 수용되는 피보호자에 관하여, 다른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이 지불해야 하는 보호비 및 보호시설사무비를 일시적으로 대신 지불하여야 한다. ②都道府縣, 市 및 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町村은, 그의 장이 제1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서 행하는 보호를 포함함)에 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 사무비를 일시 대신 지불하여야 한다.

③町村은, 그의 장이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에 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를 일시 대신 지불하여야 한다.

제73조(都道府縣의 부담) 都道府縣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거주지가 없거나 또는 명확하지 아니한 피보호자에 대하여 市町村이 지불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 4분의 1
2. 숙소제공시설 또는 아동복지법(昭和22年<1947>法律第164號)제38조에서 규정하는 모자생활지원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피보호자(이들 시설을 이용하기에 이르기 전부터 그 시설이 소재하는 市町村의 구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피보호자를 제외함)에 관하여, 이들 시설이 소재하는 市町村이 지불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 4분의 1
3. 市町村이 지불한 보호시설의 설비비의 4분의 1

제74조(都道府縣의 보조) ①都道府縣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보호시설의 수리, 개조, 확장 또는 정비에 요하는 비용의 4분의 3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1. 그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어서 피보호자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효과적인 때
2. 그 지역에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이 설치하는 동종의 보호시설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이에 수용 또는 공용의 여력이 없는 때

②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보호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1. 후생노동대신은, 그 보호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및 都道府縣의 지사는, 그 보호시설의 예산이, 보조의 효과를 올리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변경을 하여야한다는 뜻을 지시할 수 있다.

3. 후생노동대신 및 都道府縣의 지사는, 그 보호시설의 직원이, 이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명령 또는 이들에 기초하여 행하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직원을 해직하여야 한다는 뜻을 지시할 수 있다.

제74조의2(준용규정) 0 사회복지법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국유재산특별조치법(昭和27年<1952> 法律 第219號)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 또는 동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를 받은 보호시설에 준용한다.

제75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①국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서 열거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市町村 및 都道府縣의 지사가 지불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 4분의 3

2. 市町村 및 都道府縣의 지사가 지불한 보호시설의 설비비의 2분의 1

②국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道府縣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보조한 금액의 3분의 2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제76조(유류금품의 처분)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부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호의 실시기관은, 死者의 유류금전 및 유가증권을 보호비에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②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은, 전항의 비용에 관하여, 그 유류물품상에 존재하는 다른 채권자의 선취특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제77조(비용의 징수) ①피보호자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의무의 범위 안에서 보호비를 지급한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호의 실시기관과 부양의무자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의 실시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③전항의 처분은, 가사심판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제1항을

류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본다.

제78조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보호비를 지급한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9조(반환명령) 국가 또는 都道府縣은, 아래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의 교부를 받은 보호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부담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詐僞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보호시설의 경영에 있어서 영리를 꾀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보호시설이, 이 법률이나 이에 기초한 명령, 또는 이들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처분에 위반한 때

제80조(반환의 면제) 보호의 실시기관은, 보호의 변경, 폐지 또는 정지에 따라, 선급한 보호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켜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소비하거나, 또는 상실한 피보호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장 雜 則

제81조(후견인선임의 청구) 피보호자가 미성년자 또는 성년 피후견인인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 및 후견인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보호의 실시기관은, 지체 없이, 후견인의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82조(町村의 일부사무조합 등) 町村이 일부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복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일부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을 복지사무소를 설치한 町村으로 보고, 그 일부사무조합의 관리자 또는 광역연합의 장을 복지사무소를 관리하는 町村의 장으로 본다.

제83조(보호의 실시기관이 변경된 경우의 경과규정) 町村의 복지사무소의 설치 또는 폐지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기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부 록

서는 변경전의 보호의 실시기관이 행한 보호의 개시 또는 변경신청의 수리 및 보호에 관한 결정은, 변경후의 보호의 실시기관이 행한 신청의 수리 또는 결정으로 본다. 다만, 변경 전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행하여져야 했던 보호에 관한 비용의 지불 및 부담에 관하여는,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제84조(실시명령) 이 법률에서 정령에 위임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후생성령에서 정한다.

제84조의2(대도시등의 특례) ①이 법률 중 都道府縣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昭和22年<1947> 法律 第67號) 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본조 중 ‘지정도시’라고 함) 및 동법 제252조의22제1항의 중핵시(이하 본조 중 ‘중핵시’라고 함)에 있어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도시 또는 중핵시(이하 본조 중 ‘지정도시 등’이라고 함)가 처리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률 중 都道府縣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도시 등에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66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시 등의 장이 행한 처분에 관련되는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4조의3(보호의 실시기관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호노인홈 또는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는 그 자가 이들 시설에 계속하여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그 자는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4조의4(사무의 구분) 별표의 상란에서 열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동표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84조의 5(권한의 위임) ①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후생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5조(벌칙) ①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明治40年 法律 第45號)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다.

제86조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제54조의2제4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음) 또는 제7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제28조제1항(요보호자가 위반한 경우를 제외함), 제44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기피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人の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人の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인에 대하여서도 전항의 형을 과한다.

부 칙

- 1.(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昭和25年 5月 1日 이후의 급부에 관하여 적용한다.
- 2.(생활보호법의 폐지) 생활보호법(昭和21年 法律 第17號. 이하 ‘구법’이라 함)은 폐지한다.

부 록

참고문헌

<논문>

- 최숙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0.
- 정경배, “상산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정책”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 “한국형 복지경제모형과 정책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7.
- 유경준,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전영평,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개혁과 위기관리책무” 한국행정연구원, 2001 제10권제2호.

<단행본>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0
- 박순일 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산조사방법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변재관 외, 『한국의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박순일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비전2010-생산적복지공동체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9. 2000.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지침 보완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모음』, 보건복지부, 2000.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0.
- 법제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연구』 법제처, 1997.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I』, 나남출판, 2000.

<국회 보고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00. 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및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2000. 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진복지국가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2000. 8.